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4-66-01
연구총서 14-CB-05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Effective Measures to Advance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for Reducing Recidivism(Ⅲ)

최영신 | 이승호 | 윤옥경 | 금용명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4-66-01	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66-02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14-66-03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선임연구위원	금용명 교정관(파견) 심혜인 인턴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승호 교수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옥경 교수

발 간 사

우리나라 교정처우가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선결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3개년에 걸쳐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III)」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제는 이 분야의 연구 시의성과 시급성의 순서에 따라 매년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1년차도인 2012년에는 흉악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고위험범죄자 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간의 협력체계 강화방안」, 「출소자 주거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양성방안」의 세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2차년도인 2013년에는 「교정보호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및 「교정보호정책 시행과정에서 민간참여의 평가 및 민간참여 확대방안」을 세부연구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인 2014년에는 '국제적 동향에의 능동적 대처'라는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와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1차년도에는 주로 범죄자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간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비로소 재범방지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고, 예산이나 인력의 활용 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통합적 범죄자관리체계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의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2차년도에는 범죄자 관리와 재범방지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없이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까지의 국가중심적인 교정에서 관민협력적인 교정으로의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년도인 2014년에는 우리나라가 교정보호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인권을 존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운용하여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행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교정처우가 국제규범의 이행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정시설의 선진화, 사회복귀처우의 내실화 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의 연구성과가 범죄자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우리의 교정처우가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3개년에 걸쳐 이 연구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연구진 여러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연구책임자로서 성심을 다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진수 선임연구위원과 3차년도에 연구책임자를 맡아 연구를 마무리해준 최영신 선임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외에도 3차년도에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애써주신 건국대학교 이승호 교수, 경기대학교 윤옥경 교수, 금용명 교정관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조사와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학계 및 실무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박상옥

목 차

국문요약 ··· 11

제1장 서론(최영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7
1. 교정보호에 대한 협동연구의 필요성 ··· 17
2. 교정보호 선진화를 위한 목표와 과제 ··· 18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내용 ··· 20
1. 세부연구과제 1: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 20
2. 세부연구과제 2: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 22

제2장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이승호·윤옥경·금용명) ··· 25
제1절 연구목적 ··· 27
제2절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 개관 ··· 29
1. 국제규범의 의의 ··· 29
2.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 ··· 30
3. 수용자 처우와 교정시설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 31
4. 소년 및 여성 교정에 관한 국제규범 ··· 32
제3절 수용과 질서에 관한 사항 ··· 33
1. 수용 ··· 33
2. 보안 ··· 34
3. 규율과 징벌 ··· 35
제4절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에 관한 사항 ··· 35
1. 생활과 작업의 공간 ··· 36
2. 급식과 의류 및 침대·침구 ··· 37
3. 위생과 의료 및 운동 등 ··· 39
제5절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 ··· 44
1. 처우의 목적과 방식 ··· 44

2. 교도작업 ··· 46
3. 교육과 종교 및 신문·방송·도서의 이용 ··· 49
4. 상우와 귀휴 및 석방의 준비 등 ··· 51
제6절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의 감독에 관한 사항 ··· 53
1. 권리내용 ··· 53
2. 권리구제와 감찰 등 ··· 58
제7절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61
1. 미결수용자 ··· 61
2. 소수수용자 ··· 64
제8절 교정시설의 조직과 직원 ··· 66
제9절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규범 ··· 69
1. 소년수용자 ··· 69
2. 여성수용자 ··· 76
제10절 결론 ··· 80

제3장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용명) ··· 83
제1절 서론 ··· 85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85
2. 연구방법 ··· 86
가. 국제규범의 분석 ··· 86
나. 국내법규의 분석 ··· 87
다. 교정 실제의 점검을 위한 연구방법 ··· 87
3. 기준 국제규범의 의미와 성격 ··· 88
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의미와 성격 ··· 88
나.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에 관한 규칙」의 의미와 성격 ··· 88
다.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의 의미와 성격 ··· 88
제2절 교정처우의 「최저기준규칙」 이행실태의 평가 ··· 89
1. ‘수용질서’의 이행실태 평가 ··· 89
2.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의 이행실태 평가 ··· 92
3. ‘수형자 처우’의 이행실태 평가 ··· 95

4.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의 이행실태 평가 ······················· 98
5.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의 이행실태 평가 ···························· 100
6.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의 이행실태 평가 ··· 104
제3절 소년·여성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 106
1. 소년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 106
2. 여성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 111
제4절 교정처우 관련 개선방안 ·· 115
1. 교정처우의 주요 영역별 개선방안 ·· 116
가. 수용시설과 수용시설 설비의 선진화 ·· 116
나.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처우의 내실화 ···························· 116
다. 교정직원의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 117
라. 의료 처우의 선진화 ··· 117
마. 교정시설에 대한 감찰과 교도작업에서 수형자에 대한 보호 ······ 118
2. 수용자 특성별 처우의 개선방안 ·· 119
가. 소년수용자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 ··· 119
나. 여성수용자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 ··· 119
3. 국내법규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 ·· 121
가. 「최저기준규칙」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 ··· 121
나. 소년과 여성수용자 처우를 위한 국내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 ··· 121

표 차례

〈표 1-1〉 연도별 세부연구과제 ·· 20
〈표 3-1〉 ‘수용질서’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 90
〈표 3-2〉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 93
〈표 3-3〉 ‘수형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 96
〈표 3-4〉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 98
〈표 3-5〉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 101
〈표 3-6〉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 105
〈표 3-7〉 ‘소년수용자’에 관한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 107
〈표 3-8〉 ‘여성수용자’에 관한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 112

국문요약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협동연구과제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 방안 연구」의 3차년도 연구로서 2014년도에는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와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세부연구과제로 수행하였다.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정립된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교정처우 분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근거가 되는 중요 국제규범의 내용을 분석·정리하였으며,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우리의 교정 현실에서 교정처우 전반을 포함하여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와 관련하여 해당 국제규범의 규정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그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두 가지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총 23개의 교정 관련 국제규범을 (1)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 (2) 수용자 처우와 교정시설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3) 소년 및 여성 교정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분류하여 주요 내용을 개관하였다. 제3장부터 제9장은 교정 관련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을 교정처우의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와 「유럽교정시설규칙」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제9장에서는 소년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국제규범으로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여성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국제규범으로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0장은 결론으로서 에필로그 형식으로

교정처우에서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의 세부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세부 영역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국제규범의 이행수준을 평가하였다. 교정처우에 대한 점검은 국내법규의 이행실태와 교정실제의 이행실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국제규범의 세부 조항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국제규범의 해당 내용이 국내법규에 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동시에 교정의 실제사태는 이러한 법규정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이러한 점검에 근거하여 우리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교정처우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규범은, 교정처우 전반에 대해서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을,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이 미비한 처우영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지,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소녀수용자와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정처우와 관련하여 입법 미비로 인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여러 영역 중에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이행수준이 특히 미흡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수용시설 자체의 문제와 수용시설의 설비’와 관련된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수형자의 사회복귀 처우’이다. 이어서 ‘교정직원의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수용자 의료 처우’, ‘감찰 및 교도작업 수용자의 보호’ 와 관련된 항목의 이행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소년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국제규범의 이행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성인범죄자와의 분리,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제한, 시설환경, 의료서비스-약물남용 재활 교육의 개선, 무의탁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aftercare)의 내실화, 외부기관에 의한 교도소 점검으로서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의 참여필요성, 직원의 전문성과 소년수용자에 대한 자세의 개선이 제시되었고, 여성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의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근거지 근접 이송, 평가와 분류의 개선, 정신건강, 약물남용과 치료, 자살과 자해 예방, 직원들에 전문교육, 10대 소녀수용자에 대한 관심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법규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으로서 국내법규에서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의 이행이 미진한 부분으로서 미결수용자 처우 관련 규정, 교정직원의 특수성과 전문적 직무교육에 대한 세부 규정, 수용자의 권리구제와 감찰 관련 규정, 수용자 의료처우의 질 개선을 위한 법규정, 교정사고시 외부인력 투입 관련 법규정,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규정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규의 제정 및 법규 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 처우에서도 국제규범의 이행수준이 부족한 처우 영역을 중심으로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최 영 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교정보호에 대한 협동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협동연구로서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이다. 이 연구는 3개년 동안 진행된 장기과제로서 2012년도에 시작하여 2014년도는 그 3차년도에 해당된다.

범죄자관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교정(시설내처우)'과 '보호(사회내처우)'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있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교정(시설내처우)은 교도소의 영역이고, 보호(사회내처우)는 보호관찰소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교정과 보호의 구분은 범죄자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범죄자 관리 내지 재범방지의 측면에서 국가기관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비용·인력의 활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즉 범죄자관리를 담당하는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은 같은 법무부 소속이면서도 정책수립과 프로그램의 개발·실시는 각기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우범자(고위험범죄자) 관리 측면에서 기관간의 연계가 부재하여, 각 기관이 범죄자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위험범죄자 중점관리'라는 관점에서 형사사법기관의 기능과 지역사회자원을 통합하려고 하는 선진 각국의 교정보호 동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정보호의 연구에 있어서는 개별 형사사법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교

정과 보호를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국가적, 지역사회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출소자 재범방지와 관련된 교정보호의 영역에 있어서는 법무부(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와 경찰청을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양한 유관부처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를 근거로 행형법, 교정학, 범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다양한 전공영역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방지라는 교정보호의 궁극적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교정보호 선진화를 위한 목표와 과제

본 연구에서는 교정보호의 선진화를 위한 목표를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설정하고, 각 분야에 대해 2012년 이후 3개년에 걸쳐 과제의 시의성과 시급성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부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목표 1: 통합적 범죄자관리체계 구축

최근 선진 각국의 동향을 보면, '고위험범죄자 재범위험성 중점관리'라는 관점에서 형사사법기관의 기능과 지역사회자원을 통합하고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우범자관리, 범죄자처우 프로그램의 개발, 위험성평가도구의 개발 등 범죄자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경찰·교도소·보호관찰소간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재범방지 효과면이나 예산·인력 활용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범죄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통합적 범죄자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세부 연구과제로서는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고위험범죄자 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간의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선정하였다.

목표 2: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

출소자의 효과적인 사회복귀정착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취업 및 주거지원의 문제이므로 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한 민간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정보호정책 시행과정에서 교정위원과 범죄예방위원 등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실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으며, 교정위원도 관행상 잘못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참여확대와 관련된 세부 연구과제로는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내기업 양성방안」, 「교정 민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선정하였다.

목표 3: 민영화 확대 등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범죄자관리업무는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가 적당하지 않은 영역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자관리가 고비용저효율이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으며, 또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설립·운영 중에 있어 민영교도소의 운영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간처우시설 등 사회내 처우 영역에서의 민영화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자 처우 프로그램 개발·시행 등 범죄자관리에 관한 부분적 민영화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민영화 확대와 관련된 세부 연구과제로서는 「교정보호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를 선정하였다.

목표 4: 국제적 동향에의 능동적 대처

우리나라가 형사사법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지위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인권을 존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사사법분야의 국제기준 및 규범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및 실무적 성과를 기반으로 아태지역 등 국외로 이를 적극 홍보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교정처우의 국제화와 관련된 세부 연구과제로는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와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을 수행하였다.

〈표 1-1〉 연도별 세부연구과제

연도	세부 연구과제
2012년	•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 고위험범죄자 관리에서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간의 협력체계 강화방안 •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내기업 양성방안
2013년	• 교정보호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 교정 민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2014년	•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내용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 방안 연구」의 3차년도인 2014년에는 다음과 같이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과 관련하여 두 가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세부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1. 세부연구과제 1: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대부분의 내용이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국제규범에 대한 검토·분석이라는 작업이 조사연구를 필수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입각한 선택이다. 이 연구는 교정 분야에 관련된 총 23개의 국제규범을 사항 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발간된 논문과 출판물들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국제 행형개혁위원회가 편찬한 『Making Standard Work』[1]는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 둔다(이하 이 출판물을 약칭하여 MSW로 표시함). 문헌연구와 더불어 행형법 및 형사법 전문가들과의 면담과 회의도 진행하였는데, 이는 분석대상인 국제규범을 선정하고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에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23개의 국제규범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심축은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이하 「최저기준규칙」이라고 함)과 「유럽교정시설규칙」(The European Prison Rules)」에 두어져 있다. 이는 전자가 유엔이 제정한 교정 관련 국제규범의 명실상부한 모범규정이고, 후자는 내용에 있어서 전자의 개정판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교정시설규칙」은 공식적으로는 유럽 평의회의 회원국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최저기준규칙」의 개정방향을 제시해 주는 모델로서 취급될 수 있다. 양 규칙 이외에 여타의 국제규범들은 종류에 따라 교정과 관련된 사항을 몇 개의 조문에서만 규정하는 것도 있고 그 자체가 특정 교정 분야를 집중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여타의 국제규범들은 해당 사항의 설명에서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두 개의 규칙 이외의 국제규범들은 해당 사안에 맞추어 추가로 분석하였다. 또한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소수수용자라는 범주를 넘어선 특별수용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년수용자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을, 여성수용자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을 중심으로 해당 규범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에필로그 형식으로 교정처우에서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하나의 주제를 분석하거나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어서 교과서의 편제와 사항별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

1) Penal Reform International, Making Standards Working-an international handbook on good prison practice, 1995.

고, 본론으로부터 모종의 해결방안 및 특정 제안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을 따른 것이다.

2. 세부연구과제 2: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이 연구에서는 우선 교정처우의 세부영역을 구분하고, 각 세부영역별로 해당하는 국제규범을 분석한 다음, 각 영역별로 국제규범의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교정처우 영역의 관련 국내법규의 분석과 교정 실제의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제규범의 분석은 주요 내용별로 기준이 되는 국제규범을 정하여 각 국제규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정처우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을 기준이 되는 국제규범으로 정하여 분석하였고, 소년수용자 처우에 대해서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아바나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을, 여성수용자 처우에 대해서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방콕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을 기준 국제규범으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국내법규의 분석은 교정처우와 관련된 법조문이 포함된 법률,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국제규범의 분석을 위해 구분한 교정처우의 하위영역 구분을 국내법규의 분석에서도 그대로 활용하였다.

국제규범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교정 실제의 점검은 ‘교정시설 대상 서면조사’, ‘교정처우 관련 법무부예규 및 훈령 등의 분석’, ‘선행 실태조사 자료의 활용’,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 결정례 분석’의 네 가지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교정처우의 전반에 관한 국제규범 이행실태의 평가는 「최저기준규칙」을 기준으로 교정처우의 주요 영역을 ‘수용질서’(수용, 보안, 규율과 징벌),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기본원칙, 생활과 작업의 공간, 급식과 의류 및 침대·침구, 그리고 위생과 의료 및 운동 등), '수형자의 처우'(처우의 목적과 방식, 교도작업, 교육과 종교 및 신문·방송·도서의 이용, 그리고 상우와 귀휴 및 석방의 준비 등),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의 감독'(권리내용과 권리구제와 감찰),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의 관리'(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교정시설의 조직과 직원'(교정시설의 조직과 직원)으로 구분하여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영역의 국내법규를 분석하고 교정현장의 실제를 점검하였다.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소년수용자의 경우에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여성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각각 해당하는 교정처우의 세부영역별로 국내법규와 교정실제의 점검 내용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법규의 분석과 교정실제의 점검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대개는 법규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교정 현장에서 실행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다.

제2장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이승호 · 윤옥경 · 금용명

제2장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제1절 연구목적

이제 교정 분야는 단순히 국내법의 규제대상에만 머무는 영역이 아니다. 이미 적지 않은 국제규범이 만들어져 있으며, 각국에 적극적인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규범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이를 입법과 실무에 반영하는 일은 교정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실행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정 분야에서도 공유되었음이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과거의 「행형법」을 명칭에서부터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는 교정 관련 국제규범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설명된다.[2] 덧붙여서,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교정 분야는 동 위원회의 주요 감찰 대상이었는바, 이를 통해 교정의 실무도 국제규범의 기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발전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비롯한 국제규범을 감찰의 중요 잣대로 사용함에 따라 국제규범의 요구에 적응하는 실무의 운영이 정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간의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사회에서 교정 관련 국제규범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교정의 법제와 실제를 평가·재단하는 작업은 본격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교정 관련 국제규범을 단순히

2)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8호로 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6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번역해 놓은 정도의 작업이라든지[3] 일부 특정분야에서 국제규범을 잣대로 한 평가작업[4] 내지 교정시설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 평가는 행해진 적이 있지만,[5] 교정 관련 국제규범의 전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교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국제규범에 대한 종합적 검토·분석을 교정 분야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국제 형사사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규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교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정립된 교정 관련 국제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여기서 행하는 '교정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는 이후 행해질 '우리나라 교정법제와 실무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의 선결과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교정 분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규범의 내용을 분석·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연구는 자체의 독자성도 갖출 수 있도록 수행될 것이라는 점을 연구목적의 기술에 덧붙이고자 한다. 그 동안 교정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상황인 바, 이 연구는 그에 대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정 관련 국제규범을 체계화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대표적인 것으로 교정본부에서 교정 관련 국제규범 27개의 번역본을 <일반적 국제규칙>, <교정처우에 관한 국제규칙>, <교정직원에 관한 국제규칙>, <소년 교정처우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나누어 편집해 놓은 미간행물을 들 수 있다.

4)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대상으로 「최저기준규칙」과 국내법규를 조문 정리의 수준에서 비교한 문헌이 있다(조은경·이인영,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186-263면 참조).

5) 한영수 외,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제2절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 개관

1. 국제규범의 의의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에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경성법(hard law)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soft law)이 존재한다. 전자는 각국이 입법과 행정 및 사법의 영역에서 해당 규범을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실행은 강제적인 것으로 개별 국가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담 지워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곧 불법이 된다. 반면, 후자의 연성법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준수 여부는 각 국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연성법은 엄격한 의미에서 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순한 정치적인 표현도 아니어서 법과 정치의 중간영역에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행동원칙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6]

일반적으로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등과 같이 인권 전반에 대하여 다루는 국제규범은 대부분 경성법이며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이하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이라고 약칭함),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The UN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과 같이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교정시설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은 연성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정처우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정리할 때 경성법보다 연성의 준칙을 분석하는 일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전자보다 후자에 중점을 두어 분석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제규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이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국제규범이라는 용어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경성법(hard law)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soft law)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

6)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이론과 사례(제3판), 박영사, 2012, 67면

2.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유엔헌장」 제1조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로 인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인권장전인 「세계 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유엔총회는 이에 덧붙여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과 「고문 등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에서 교정처우와 관련하여 실천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지니는 것은 제5조(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이며, 이는 교정처우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명제이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7조(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와 제10조(①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이며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처우된다, ③ 교도소 수용제도는 수용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여야 한다)가 교정처우와 관련하여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주로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적당한 생활을 유지할 권리,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등과 같이 자유권 이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서 교정처우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 규약 제13조 교육받을 권리와 제7조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보수 수준과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은 교정 작업의 운영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기준으로 거론될 수 있다.

한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의 인종차별 금지의 지침은 교정처우에 있어서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등에 있어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문 등 방지 유엔협약」(고문방지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고문의 절대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는 고문에 미치지 않는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벌도 금지함으로써 고문 유사행위로까지 금지의 범위를

넓힌다.

3. 수용자 처우와 교정시설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유엔은 수용자 처우의 실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장려하고 촉진하였고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최저기준규칙」의 핵심적 내용을 추출하여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탄생시켰다. 이 규범의 주요 내용은 피구금자도 인간고유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하고, 형사시설의 책임은 사회전체 구성원의 복지의 충실과 발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국가의 책임 아래에 달성하여야 하며, 피구금자는 인격의 충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적 활동 및 교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지역사회 및 사회내의 관계 기관의 협력과 참가를 얻고 피해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하면서 출소자가 최저 가능한 조건 아래에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 등으로 정리 된다.

한편 수용자 처우에 관한 원칙으로 「최저기준규칙」의 핵심내용을 추출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신의 자유가 박탈당한 사람의 보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모든 억류·구금된 자의 보호원칙」, 미결수용자의 형사처리에 관한 내용이 중심인 「미결구금에 관한 기본원칙」이 있다.

그리고 수용자 처우에 관한 권고로 수형자의 작업은 부가적인 형벌이 아니라 수형자의 개선갱생, 직업훈련, 좋은 노동습관을 촉진하고 시설 내 무질서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 시설내의 작업으로부터 수익을 올릴 목적을 위하여 수형자 개인 및 직업훈련의 중용성이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교도작업은 근로습관과 일에 대한 흥미를 환기시키는 조건과 환경 아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 일반노동자의 안전·건강의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는 시설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 수형자는 그 작업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교도소 작업에 대한 권고」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 피구금자에 대하여 언어, 문화, 습관 및 종교의 차이 등의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다양한 곤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적절한 처우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 외국인 피구금자에 대하여 자국민인 피구금자와 같은 정도의 교육, 노동 및 직업훈련의 실시, 종교상의 계율 및 습관의 존중, 그 국가의 영사부

와 연락할 권리의 고지, 면회 및 통신에 대한 모든 필요에 따른 기회의 제공, 보호관찰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한 권고」, 개방처우시설에 대한 정의, 입소대상이 되는 피구금자 선택의 기준, 성공조건, 처우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방처우시설에 관한 권고」가 있으며 교정시설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법집행관 행동준칙」, 「법집행관의 물리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일반원칙」, 「행형·교정시설 직원의 선발 및 연수에 관한 권고」, 「의료윤리원칙」, 「수형자 이송조약」이 존재한다. 한편 유럽수준의 보다 자유주의적인 공통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럽교정시설규칙」도 있다.

4. 소년 및 여성 교정에 관한 국제규범

소년 및 여성 교정에 관한 국제규범은 크게 일반 국제규범과 「소년사법운영 최소기준규칙」,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일반 국제규범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그 밖의 어떠한 분야에서도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아동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조약에서 정하는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이 있다.

한편 「소년사법운영 최소기준규칙」은 시설의 수용목적이 소년의 감독, 보호, 교육, 직업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있고, 공평한 처우와 수용된 소년의 교양 또는 직업상 훈련을 부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은 연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은 모든 형태의 소년구금시설의 유해한 환경을 감소시키고 구금된 소년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 소년원, 소년감별소에 수용된 소년의 처우 및 소년수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은 여성수용자의 배치, 개인위생, 일반의료, 부인과 진료, 정신건강 진료, 약물치료와 자해예방, 안전, 징벌, 보호장비 사용, 청원, 외부교통, 직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과 훈련, 소녀수용자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3절 수용과 질서에 관한 사항

1. 수용

국제규범은 수용과 관련하여 수용지역, 구분수용, 수용자의 등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수용지역과 관련하여 「모든 억류·구금된 자의 보호원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 수용자는 가족 및 친지들과의 유대를 유지하고, 재사회화의 효과적인 실행(수형자)과 정당한 법적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미결수용자) 주거와 가까운 지역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교정시설이 사회재통합 장소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용지역의 결정과정에서 가능하면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두 가지 고려사항을 덧붙여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정시설은 다수의 수용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함께 수용된 수용자에 의해 수용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수용자의 구분수용에 관하여 ① 기결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② 남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 ③ 미성년 수용자와 성인 수용자를 구분하여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④ 수용자의 위험성 정도 역시 구분수용의 또 다른 준거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용자의 자의적인 수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 공통적으로 수용자의 신원과 수용이유, 수용일시 등을 문서의 형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부는 임의적 변경을 규제하기 위하여 컴퓨터상의 기록이 아니라 편철장부로 하고 화재 등에 의해 소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할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를 등록하면 ① 수용시설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임의로 구금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할 수 있고, ② 임의구금 여부에 대한 감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보안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외부와 차단하여 구금한 후 그 안에서 동료 수용자들과 함께 단체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보안은 수용자의 도주를 방지하는 외부적 보안과 수용자 및 기타 관계자와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부적 보안으로 나눌 수 있다.

보안업무에는 검사와 보호장비, 강제력과 무기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보안업무는 필연적으로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갖게 되므로 실행에 있어 과도한 권한행사를 자제하는 법원칙이 요구되며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이다. 「유럽교정시설규칙」역시 제18조 제10항과 제51조 제1항에서 보안을 행사함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보안업무의 일환으로 신체와 물품 및 장소 등을 조사하여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조치인 검사가 존재하는데 「유럽교정시설규칙」은 검사의 대상에 신체와 물품, 장소 뿐 아니라 방문자와 그들의 소지품 및 직원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검사의 절차와 관련하여 「유럽교정시설규칙」은 대상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동성의 직원이 검사해야 한다는 것과 수용자의 신체 내부는 직원이 검사할 수 없고 의료진에 의해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 수용자의 소지품을 검사함에 있어서 수용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보안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수용자의 신체를 억압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보호장비가 존재한다. 보호장비는 대상자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안의 여러 수단 중에서도 보호 장비는 수용자에 대한 직접 강제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강하게 우려되는 장비이다. 「최저기준규칙」은 보호 장비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은 보호 장비의 종류에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편, 강제력과 무기 역시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은 모두 강제력 행사의 사유를 ① 수용자가 도주를 시도하거나 ② 수용자가 직원의 적법한 명령에 대하여 저항을 하는 경우 및 ③ 자기방어를[7] 위

7) 다른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력 행사는 두 번째 사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다.

3. 규율과 징벌

「최저기준규칙」은 규율에 관하여 두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규율의 필요성이며 두 번째는 규율이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편, 징벌은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이다. 행정법상 징계의 일종이므로 징벌의 요건과 절차 및 내용 등은 미리 정해진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

국제규범은 징벌법정주의와 이중징벌금지의 원칙, 최후의 수단성, 비례의 원칙을 명정하고 있다. 한편, 징벌부과의 절차와 관련하여 국제규범에서 발견되는 첫 단계의 사항은 보고와 조사에 관한 것이다. 이는 「유럽교정시설규칙」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가 주장되는 경우에 즉시 권한 있는 자에게 보고하고 불필요한 지체 없이 즉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 규정이 지니는 실천적인 의의는 보고와 조사가 행해져야 할 뿐 아니라 시기의 면에서 '즉시'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제4절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에 관한 사항

수용자에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 환경을 마련해 주고, 교정시설 밖의 정상적인 생활에 근접할 수 있는 의료지원, 운동 등의 생활처우를 제공하는데 있어 국제규범에서는 존엄성의 원칙과 정상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에 관해서는 「자유권규약」 제10조와 「모든 억류·구금된 자의 보호원칙」 제1조에서 구금, 억류 등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처우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 존엄성을 해하는 처우 그 자체만으로도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제5조, 「자유권규약」 제7조, 「모든 억류·구금된 자의 보호원칙」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에게 수용자체가 형벌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내 생활에 관한 처우가 다른 징벌로서의 기능을 해서는 안 되며, 교정시설내외부의 생활 차이가 형기 이후에 사회복귀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수용자 처우를 정상성의 원칙에 따를 것을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1. 생활과 작업의 공간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에 대해 국제규범에서는 거실의 유형과 거실과 작업실의 공간 및 설비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수용자를 독거실, 혼거실의 거실배정을 하는 것은 수용자의 생활과 시설관리 및 교정처우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쟁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기준규칙」 제9조와 「유럽교정시설규칙」 제18조에서는 독거수용을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규칙에서 공동거실에 수용자를 혼거수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양규칙에서 혼거수용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최저기준규칙」은 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거수용을 허용하는 것은 혼거수용에 소극적 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혼거수용 사용을 한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교정시설규칙」은 교정처우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동거실에서의 수용이 선택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혼거수용의 순기능 가능성에 대해 전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혼거수용 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수용자간의 다툼과 폭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양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공동수용 대상자 간에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수용자끼리 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혼거수용에 대해 수용자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더 강조하고 있다. 덧붙여 「최저기준규칙」에서는 공동거실 순찰을 야간에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제규범에서는 수용자의 기본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실의 공간과 바닥

면적, 조명, 환기, 난방 등의 설비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최저기준규칙 제10조-제11조, 「유럽교정시설규칙」제18조 참고). 그러나 지역에 따른 환경의 차이, 각국 재정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정처우가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각 설비에 따른 구체적인 수준이 모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MSW 3장 15 참조). 조명, 환기, 경보장치 등 교정시설 설비에 관한 몇 가지 국제규범 세부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① 창문을 통하여 충분한 자연채광이 확보되고, ②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야 하며, ③ 수용자의 시력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인공조명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기 유입에 관한 '환기'의 측면에서 양 규칙에 입장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최저기준규칙」은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환기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적절한 인공토풍의 설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저기준규칙」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수용자가 재난사고, 수용자간의 충돌 등으로 야기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직원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거실과 작업실에 경보장치가 마련되어 한다는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2. 급식과 의류 및 침대·침구

행형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용자들에게 급식의 제공에까지 형벌의 요소를 개입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에 국제규범에서는 급식의 내용과 제공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급식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는 영양, 조리, 식사시간, 음용수 등을 두고 있으며, 「최저기준규칙」 제20조와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2조가 해당 국제규범이다. 우선 수용자의 급식은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수용자의 나이, 건강, 신체상태, 작업내용 등의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한 영양수준의 음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최소한의 영양기준은 법률적으로 규정해야한다고 지침으로 설정하였다.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 수용자 급식 조리과정에서의 위생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MSW는

청결한 식사장소, 거실내 식사시 변기 옆에서 식사를 강요하지 않는 등의 수용자의 식사과정에서도도 위생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급식제공시간에 관해서는 「최저기준규칙」은 통상의 식사시간에 맞춰어 제공되어야 함을 지침에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교정시설규칙」은 하루 동안 적당한 시간차를 둔 3회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또한 양규칙에서 음용수의 제공은 수용자가 필요한 때 언제나 마실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MSW에서는 거실에서도 수용자가 음용수를 섭취할 수 있도록 정해진 용기에 식수를 담아 거실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의료적처우가 필요한 수용자의 경우는 의료진의 식단제시가 허용되어야 하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의류에 관하여 명시된 국제규범은 「최저기준규칙」 제17조, 제18조이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0조가 해당한다. 양 규칙의 공통된 사항을 살펴보면, ① 수용자의 의류는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필요시 교체되어야 하는데, 특히, 「최저기준규칙」에서는 내의의 위생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덧붙여 MSW에서는 열대지역과 같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의류의 건조시 도난과 같은 상화에 관한 주의사항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② 관제의류는 기후와 건강유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저급하지 않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③ 수용자가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경우 수용자라는 점이 인식될 수 있는 의류의 착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의류의 착용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수용자의 수면도구에 관해서는 「최저기준규칙」 제19조와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1조의 국제규범이 해당되며 이들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① 각 수용자에게 개별 침대, 침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데, 이는 수용자의 편안한 수면권 보장과 수용자간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하는데서 기인한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 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교정처우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8]. ② 침대와 침구의 청결한 관리가 준수되어야 함을 양 규칙에서 제언하고 있다. 양 규칙을 면밀히 살

8) MSW 3장 46에서도 나라에 따라 침대가 요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도 제언하고 있다.

펴볼 때 「최저기준규칙」은 청결한 침구의 지급을,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침구의 양호한 관리를 조금 더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위생과 의료 및 운동 등

수용자의 위생과 관련한 국제규범은 화장실과 같은 ① 위생설비, 목욕, 샤워, 세면, 이발, 면도 등과 같은 ② 신체위생, 교정시설내 ③ 청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수용자들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위생설비에 관한 국제규범을 살펴보면 「최저기준규칙」 제12조에서는 청결과 단정함을, 「유럽교정시설규칙」 제19조에서는 청결 및 프라이버시의 존중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나아가 MSW에서는 위생설비의 접근이 용이할 것과 수세식 변기를 이용할 여건이 되지 못할 경우, 용기를 수회 비워 최대한 상황에 맞는 청결함을 유지할 것, 화장실 감독이 필요할 경우 수용자와 같은 성별의 교정직원이 감독해야 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수용자 신체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 있는 신체위생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 국제규범으로는 「최저기준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19조 제4항, 제7항이 해당한다. 양규칙에서 공통적으로 수용자의 목욕 및 샤워에 관한 지침을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 횟수에 관하여 「최저기준규칙」은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라는 원칙하에 '온대기후의 경우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을 요구 하고 있으며,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이보다 상향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최소한 주 2회 이상'을 요구하면서 '가능한한 매일' 목욕·샤워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덧붙여 MSW에서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수용자는 교대시 마다 목욕·샤워가 가능하도록 작업환경에 따른 수용자 신체위생을 강조하고 있다[9]. 또한 각 교정시설의 '기후에 알맞은 온도'의 목욕·샤워 물을 수용자에게 제공할 것을 양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에서는 목욕·샤워를 수용자의 의무로 여겨지는데, 이는 수용자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정시설 구성원 전체 위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목욕·샤워와는 별개로 「최저기준규칙」에서는 매일의 세면을 위해

9) MSW 3장 27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에게 물을 비롯한 세면용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각각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은 목욕·샤워, 세면과는 달리 수용자의 이발·면도에 대해서는 수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정시설에서는 이발·면도 도구를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MSW는 의학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의 의지에 반하여 머리를 깎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강조하고 있다[10]. 특히 면도기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한 에이즈감염 등을 주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면도기구가 부족할 경우 수용자의 수염을 기르게 하는 편이 낫다고 MSW는 권고하기도 한다.

여성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렵교정시설규칙」에서는 생리위생물품이나 유아와 동반 생활하는 여성수용자의 경우 귀저기 같은 유아위생용품 등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차적으로 MSW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화장을 하는 나라의 경우, 수용자의 편의제공 목적이 아닌 의무로서 부과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11]

수용자가 생활하는 교정시설을 청소함으로써 신체위생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의 「최저기준규칙」제14조, 「유럽교정시설규칙」제19조에서 교정시설을 청결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것을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실제 청소작업 자체가 교정직원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다[12]. 특히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청소도구 제공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머무는 거실과 사용시설의 청결을 강조하고 있다.

수용자는 구금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정에서는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기획을 위해서는 수용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의 관점이 먼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수용자 의료처우의 기본관점에 관한 국제규범으로는 「최저기준규칙」 제62조, 「유럽교정시설규칙」제39조, 제40조,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제9조가 있다. 여기서 자유를 박탈당한 수용자의 생존을 확보하고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를 제공할 것에 관한 정부의

10) MSW 3장 36
11) MSW 3장 37
12) MSW 3장 28

책무가 있음을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정당국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제공의 의무에서 더 나아가 수용자의 권리로 「유럽교정시설규칙」과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은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의료처우와 관련하여 국제규범에서는 크게 교정시설의 의료인프라, 의사의 역할, 의료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제도 등 세 가지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의료인프라와 관한 국제규범은 「최저기준규칙」 제22조, 제52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40조, 제41조, 제46조가 있다. 수용자에 대한 의료제공에 있어 사회의 의료체계와 '긴밀한 관계'를 양 규칙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일반기준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수준에 반해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수용시설의 의료업무가 사회의 의료체계에 통합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영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유럽국가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의사의 수 및 전문분야에 관해서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을 살펴보면 양규칙에서 상근과 비상근을 포함한 의사 1명이상이 의료처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비상근 의사에 대해 지근거리에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할 것에 관한 업무지침도 규정하고 있다. 의사의 진료 전문분야에 관해서는 양규칙에서 정신과, 내과의 진료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교정시설규칙」은 내과·외과·안과 등의 진료도 가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의무적으로 교정시설내 자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갖추어야 한다고는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련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의료 설비와는 별개로 적절히 훈련된 간호사나 의무직원 같은 의료 보조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용자를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 외부의료체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규범에서 요구하는 의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① 수용자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로서의 역할, ② 교정시설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감독하는 보건위생 담당자로서의 역할, ③ 수용자 처우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조언하는 역할이다.

수용자의 진단과 관련한 국제규범은 「최저기준규칙」 제24조, 제25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42조, 「모든 억류·구금된 자의 보호원칙」 제24조이다. 입소부터 출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 모든 수용자에 대한 입소진단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진은 의사를 기준으로 하나 「유럽교정시설규칙」은 간호사를 의료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입소시 진단내용에 「최저기준규칙」은 면접과 진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찰을 생략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었다. 아울러 「모든 억류·구금된 자의 보호원칙」에서도 입소진단의 의무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칙에서는 무료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생활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의료진단에 관해 살펴보면 수시진단의 경우 「최저기준규칙」에서는 '필요에 따라' 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반해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일반사회의 표준적인 보건관리에 부합하는 방식과 주기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양규칙은 매일진단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최저기준규칙」은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특히 주의를 끄는자'를 매일 진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교정시설규칙」은 독거 구금된 수용자를 매일 진찰대상자로 규정하였다. 덧붙여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출소전 의료진이 수용자를 진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수용자의 신청 혹은 직권에 의해 출소진단은 실시되며, 의료적·정신적 처우가 필요할 경우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지역사회의료기간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최저기준규칙」은 의료진이 수용자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취해야 하는 업무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작업에 대한 수용자의 신체적 능력을 판정하고,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환의 의심이 있는 수용자를 격리하며, 사회복귀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세부적인 내용이다.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이보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의 해당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위생상태 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국제규범은 「최저기준규칙」 제26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44조, 제45조이다. 양규칙은 정기적으로 교

정시설의 위생상태 등을 검사하여 소장에게 조언함으로써 질병 예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수용생활에 있어서의 의(衣), 식(食), 주(住)의 수용자의 신체위생 상태를 검사하는 것은 양규칙의 공통적 규정이며, 「최저기준규칙」은 체육 및 경기 등의 운영담당 요원이 없는 경우 규칙준수 사항에 추가하며,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음용수 위생상태 점검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위생검사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은 양규칙이 동일한데, 의사의 조언에 동의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제출한 조언과 자신의 보고서를 상급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교정시설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언자로서의 의사 역할에 대한 국제규범은 「최저기준규칙」 제25조, 제26조, 제32조와 「유럽교정시설규칙」 제43조, 제45조가 해당 규정이다. 양규칙에서 의사의 보고의 의무는 공통사항이며, 「최저기준규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손상되었거나 손상되었으리라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된 경우로 보고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한 교정시설의 장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양규칙 모두 의사의 조언을 고려하고 동의하는 경우 의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의사가 제출한 조언과 보고서를 상급기관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모든 억류·구금된 자의 보호원칙」 제25조, 제26조는 교정시설의 의료기록화 및 제3의 의료기관에 의한 진료와 같은 수용자대상 의료공정성확보에 관한 국제규범이다. 의료의 기록화는 의료의 연속성 확보와 의료처우의 책임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기록사항으로는 의사의 성명, 의학상 검사를 받은 사실, 검사결과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은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제3의 의료 진료를 요청할 경우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은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억류·구금된 자의 보호원칙」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즉, 교정시설 수용자는 제3의 의료진에 의한 2차적 의료진단을 사법기관에 요청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를 위한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만 예외로 인정된다. 특히, 「모든 억류·구금된 자의 보호원

칙」은 타국적 수용자를 염려해두고 설정된 국제규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적 요소인 운동의 기회를 수용자에게 제공할 것을 국제규범 「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78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7조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운동을 위한 적정한 공간과 설비 및 용구를 제공할 것에 관해서는 양규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운동 실시내용에 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실외작업을 하지 않는 수용자의 경우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1시간 이상의 실외운동기회를 부여하며, 소년수용자 등이 체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도 기상조건에 따라 실외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저기준규칙」과 달리 모든 수용자로 제공 범위가 더 넓으며,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실외운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과 운동 및 여가활동 참가를 위한 다른 수용자와의 만남도 허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위 국제규범에서 오락 및 기타 문화적 활동에 관한 규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최저기준규칙」은 수용자에게 오락 활동과 문화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유럽교정시설규칙」보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게임, 문화 활동, 취미, 이외 레저 활동을 포함한 여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규정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5절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

1. 처우의 목적과 방식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처우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국제규범은 ‘재사회화’라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최저기준규칙」 제65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102조가 해당 규칙이다. 「최저기준규칙」에 따르면 “석방된 후에 법을 지키면서 자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수형자 처우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범죄 없는 생활을 영위하

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수형자의 교정처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치료모델에 기반을 둔 일방적 개선의 처우를 탈피하여 재사회화모델이 추구하는 자주적 적응의 처우를 통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처우의 목적을 실행하기 적합한 수형자의 분류가 선행되었을 때, 처우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우선 수형자를 분류하는데 있어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일반적인 성별, 연령 등과 같이 대상자의 외부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수용분류(management classification)와 대상자의 성행특성을 기준으로 삼아 처우프로그램의 내용을 기획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처우분류(treatment classification)로 나뉘어진다. 즉, 범죄경력이나 나쁜 성격으로 인하여 다른 수형자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과 같은 수형자의 위험성의 정도나 처우프로그램의 적합성 등과 같은 성행을 기준으로 처우분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①수용자 간의 악영향을 배제시킬 수 있어 분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유가 제거 가능하며, ②사회복귀를 위한 처우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규범으로는「최저기준규칙」제67조, 제68조가 해당된다.

수형자의 분류뿐만 아니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처우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재사회화 처우를 수형자에게 실행할 수 있다. 즉, 수형자의 개별 특성에 입각하여 실행되는 처우를 '개별처우'라고 하며 관련 국제규범으로는「최저기준규칙」제66조, 제69조,「유럽교정시설규칙」103조가 있다. 양규칙은 개별처우의 대상자를 기결의 수형자로 국한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MSW는 장기간 수용이 예상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개별처우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3)]

수형자에게 맞춤형으로 수립되는 개별처우의 항목에는 교육과 작업에서부터 상담에 이르기까지 사회복귀의 준비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양규칙은 교육 및 작업관련(직업보도와 훈련, 취업상담 포함) 처우가 공통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최저기준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수형자의 심신개선(신체의 단련과 덕성의 강화)과 사회복지 및 종교적 처우의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

13) MSW 6장 45

며, 「유럽교정시설규칙」에는 그 밖의 활동으로 포괄되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각 항목에서 처우 내용을 개별적으로 기획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기준에 관해서는 「최저기준규칙」는 수형자의 ① 과거 경력(사회적, 범죄적 경력), ② 현재특성(신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 개인적 기질), ③ 장래의 상황(형기, 석방 후의 전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이처럼 형집행계획 수립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기결수용자의 개인적 상황'이라는 기준으로 포괄적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처우의 실제 운영 방식에 관한 국제규범의 내용은 개별처우의 계획은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을 양규칙에서 권하고 있다. 반면 개별처우의 계획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려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양규칙의 차이가 있는데 「최저기준규칙」은 의무관이 수형자의 신체와 정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교정시설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로 규정되어 있으며, 「유럽교정시설규칙」은 당해 수형자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형자와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개별처우의 내용을 기획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수립된 개별처우의 계획은 문서화하여 보관 할 것을 양규칙은 요구하고 있다.

2. 교도작업

교도작업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으로 교도작업의 원칙과 관련된 국제규범으로는 「최저기준규칙」 제71조, 제72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6조, 「교도소작업에 대한 권고」 제1조, 제2조이다.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교도작업의 실행과 관련하여 금지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적극적으로 교도작업이 추구해야 할 본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지만 「교도소작업에 대한 권고」에서는 석방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수단, 교정시설내에서의 시간을 건설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을 교도작업의 본질로 설정하고 있다. 자유형의 수형자에게는 교도작업은 원칙적으로 의무라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 형벌제도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

다. 「최저기준규칙」에서도 “모든 수형자는 작업의 의무를부담”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에 대한 교도작업에 있어 역사적으로 본질을 훼손시켜온 목적이 노동력 착취와 고통의 부과라는 지표였다. 따라서 국제규범에서는 공통적으로 교도작업은 노동력 착취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즉, 재정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교도작업은 금지되고 있으며, 「최저기준규칙」에서는 교도작업을 통한 수용자의 고통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교정시설규칙」과 「교도소작업에 대한 권고」에서는 처벌수단으로서 교도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시하고 있다.

국제규범 「최저기준규칙」 제71조, 제72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6조, 제105조, 「교도소 작업에 대한 권고」 제3조, 제조, 제5조, 제8조에서는 교도작업의 실용성과 유서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복귀 수단으로서 교도작업이 기능할 경우 수형자에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형기간 동안 수형자가 수행하는 교도작업은 석방 후에도 수형자의 생업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세 국제규범에서는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도작업이 일반사회에서의 작업과의 유사할 것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의 사회에서 실행되는 작업과 유사한 내용이어야 석방 후 생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형자에게 적합한 교도작업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에 관한 국제규범으로는 「최저기준규칙」 제71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6조, 제105조, 「교도소 작업에 대한 권고」 제1조, 제5조이다. 이 국제규범은 공통적으로 의무관의 판정을 기초로 하여 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적격에 부합하는 교도작업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형자가 희망하는 직업선택에 부합하고, 시설관리와 규율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 본인의 교도작업 선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도작업량과 작업시간에 관해서는 「최저기준규칙」 제71조, 제75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6조가 해당되는데,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작업 일수의 단위로 수형자가 활동적으로 작업하기에 유용하고 충분한 작업량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작업시간에 있어서는 양규칙 모두 일일 및 주간 최대 작업시간을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기준과 관습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주당 하루의 휴일을

보장하며, 처우와 교육 및 여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용자에 대한 교도작업 운영방식은 대표적으로 ① 직영방식, ② 임대방식, ③ 계약방식, ④ 단가방식이 있으며, 「최저기준규칙」 73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6조, 「교도소 작업에 대한 권고」 제2조의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제규범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저기준규칙」은 직영방식을 요구하면서 민간계약자에 의한 운영을 금지한다. 당국이 관리하지 않는 작업의 경우는 감독의 주체는 시설직원이여야 하고, 임금이 교정당국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산정에 생산고가 참작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자체적으로 또는 교정시설 내외의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도소 작업에 대한 권고」는 직영주의를 권장하며, 노동력 착취가 없고, 민간의 노동시장이 보호되는 안전장치가 갖추어 진다면 민간과의 계약에 의한 운영도 허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교도작업에 참가한 수용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국제규범은 「최저기준규칙」 제76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6조, 105조, 「교도소 작업에 대한 권고」 제711조가 있으며, 공통적으로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의무화하고, 공정한 수당, 공평한 수당, 정당한 수당 등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은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규정하는데, 수당은 허가된 물품의 구입과, 가족에게의 송부가 모두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도소 작업에 대한 권고」에서는 수형자는 교도작업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규정된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자신의 가족들을 부분적으로 돕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당의 저축에 관해서는 「최저기준규칙」은 이를 의무화 시킬 것을 요구하지만, 「유럽교정시설규칙」과 「교도소 자업에 대한 권고」는 저축이 의무가 아닌 장려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형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권하고 있다.

교도작업에서 수형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국제규범으로는 「최저기준규칙」 제74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6조, 「교도소 작업에 대한 권고」 제6조이다. 세 규범에서 공통적으로 교도작업

으로 인한 수형자의 안전과 건강, 작업병과 같은 산업 재해 등에 관해서는 사회의 일반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수준보다 불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교도작업 수형자에게 「유럽교정시설규칙」과 「교도소 작업에 대한 권고」에서는 가능한 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3. 교육과 종교 및 신문·방송·도서의 이용

교정시설에서 실시되는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교육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수용자 역시 교육을 통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의 교육과 관련된 국제규범은 「최저기준규칙」 제77조, 「유럽교정시설」 제28조, 제106조,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제6조이다. 위 3가지 국제규범은 공통적으로 성인, 미성년을 불문하고 모든 수형자가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설정하고 있으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수형자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최저기준규칙」은 특별한 대상자에 문맹자를 포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럽교정시설규칙」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자라는 표현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에 관한 교정시설의 의무성 여부를 살펴볼 때, 「최저기준규칙」은 교정시설에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도 모든 수용자에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유럽교정시설규칙」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강한 권장’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수용자 참여에 대해 3가지 국제규범 모두에서 강제적으로 수용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으나, 다만 「최저기준규칙」에서 소년과 문맹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은 국가의 통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추가로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외부 교육기관의 원조하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수형자의 구금기간을 고려하여 기획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 및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제규범에 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여하에 관계없이 수용자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9조에는 수용자의 종교 및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고, 「최저기준규칙」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교정시설내에 종교가 들어가게 된 데에는 종교를 통한 실용적 목적과 동시에 수용자의 자유권 보장에 의의가 있다. MSW는 종교의 단어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4]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국제규범 「최저기준규칙」 제41조, 제42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9조를 살펴보면, 수용자의 종교활동 참여에 도움을 줄 교역자의 존재에 관해서는 「최저기준규칙」은 교역자의 종교의식 거행과 해당 종교 소속의 수용자를 심방하는 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교역자 임명, 승인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승인된 종교의 대표자'라는 표현을 들어 교역자의 존재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의 종교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행사의 참여, 종교관련 서적의 소지, 교역자(종교대표자)의 접근 등이 허용과 종교를 강요받지 않아도 됨을 표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양 규칙에서 공통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신문, 방송, 도서 등이 해당되는데 이와 관련된 국제규범은 「최저기준규칙」 제39조, 제40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4조, 제28조이다. 신문과 방송은 단순여가활동이 아닌 수용자가 교정시설내에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며, 재사회화 목적과 관련된 처우이기도 하다. 활자매체 이용대상을 살펴보면 「최저기준규칙」은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허용하며, 이에 더 나아가 「유럽교정시설규칙」 시설의 특별간행물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출판물의 구독을 허용하여 대상범주가 더 넓다. 시청매체 이용대상은 「최저기준규칙」에서는 '방송의 청취'로, 「유럽교정시설규칙」은 '라디오의 청취와 텔레비전의 시청'이라 규정함으로써 텔레비전 시청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4) MSW 6장 38

4. 상우와 귀휴 및 석방의 준비 등

수용자의 상우제도란 징벌만으로는 수형자의 능동적인 처우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저기준규칙」 제70조에서 볼 수 있는데, 특전제도를 두어 수형자의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형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귀휴제도는 수형자에 일정한 기간 동안 행선지를 정해서 외출이나 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로써, 「유럽교정시설규칙」 제103조가 해당규정이며, 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귀휴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용자의 석방을 위한 준비에 관하여 가족 등과의 관계, 처우의 사회화, 사회적응 프로그램, 석방과 갱생보호 등을 국제규범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요인이 가족과의 교류확보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규범 「최저기준규칙」 제79조, 제80조에서는 수형자와 가족 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수용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가족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석방을 위한 준비와 관련하여 처우의 사회화란, 교정처우의 목적을 수형자의 사회복귀로 설정하였을 때, 수형자에게 실행되는 처우는 사회친화적인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관한 국제규범으로는 「최저기준규칙」 제61조, 「유럽교정시설」 제7조이며, 「최저기준규칙」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규정으로 나타냈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교정처우는 사회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사업에 사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며, 또한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의 교정참여가 장려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최저기준규칙」은 사회사업가의 중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법률과 판결에 반하지 않는 한 수형자의 사법상의 이익에 관한 권리와 사회보장상의 권리 및 그 밖의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보전해야한다는 규정을 설정하였다.

교정시설내 수형자는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였으므로 석방 이후 수용생활로부터 사회의 준법생활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규범은 「최저기준규칙」 제60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107조, 「교도소작업에 대한 권고」 제9조가 해당된다. 「최저기

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은 공통적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 및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장기형 수형자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 실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도소작업에 대한 권고」에서도 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복역 수형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통근 작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로그램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양규칙 에서는 교정시설 또는 보호관찰 등의 형태로 시행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저기준규칙」에서는 보호관찰의 방식으로 실시할 경우, 경찰에게 감독의 역할을 이전해서는 안 되며 교정당국의 감독 하에 사회적 원조를 수행하는 방식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사회기관 및 단체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해 「유럽교정시설규칙」은 해당 단체 등과 교정당국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대표자가 교정시설 및 수형자와의 접촉을 허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수형자의 석방과 관련하여 「유럽교정시설규칙」 제33조에서는 석방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체 없이 석방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정당국에 석방일자 및 시각을 기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석방된 수형자에게 갱생보호를 제공할 것에 관한 규정은 「최저기준규칙」 제64조, 제81조와 「유럽교정시설규칙」 제33조의 국제규범에서 명시되어 있다. 「최저기준규칙」 수형자의 갱생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의 형태는 정부기관이든, 사립기관이든 상관이 없으며, 가능한 한 중앙집중시스템이 바람직하고, 교정시설 및 수형자와 모든 접촉을 가질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수형자의 장래에 대한 형기 시초부터 상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권유하고 있다. 갱생보호와 관련된 지원목록에 관해서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신분증명서 및 석방을 확인하는 적절한 서류, 계절과 기후를 고려한 의복, 숙박과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제공할 것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유럽교정시설규칙」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저기준규칙」에서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석방 직후의 일정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6절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의 감독에 관한 사항

1. 권리내용

수용자는 일반권력관계에서 시민들에게 보장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규제를 가할 경우,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원칙 등에 배제되고, 교정시설이라는 국가영조물을 이용하는 자로 취급되며, 교정당국이 재량으로 제정하는 여러 규율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갖는 다는 특별권력관계이론에 입각한 관점이 과거에 있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수용자 역시 일반국민과 국가의 관계와 다름없이 일반권력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인 일반권력관계이론의 입장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수용자의 권리범위를 확대시키며, 권리제한의 요건과 절차는 더 엄격해졌다.

이와 같은 수용자의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은「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제5조,「유럽교정시설규칙」제2조, 제3조이다. 국제규범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용자의 법적지위가 일반국민과 같아야 한다는 관점을「최저기준규칙」에서는 적극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피구금자 처우에 관한기본원칙」과「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수형자는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권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구금의 불이익 이외의 권리제한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수용자에게 구금이외에 징벌 등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의 실행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도로 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권력관계론에 입각하여 수용자의 권리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세부내용으로는 ① 수용자 자신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을 수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② 외부와의 접견교통에 관한 권리, ③ 이송, 소유물, 공적활동 등의 수용자 보호를 위한 기타사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수용자에게 교정당국은 수용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수용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국제규범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조항으로는「최저기준규칙」제35조,「유럽교정시설규칙」제15조, 제30조,「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제13조, 제14조가 있다. 위의 내용을 고지하는 이유는 수용자가 교정시설내 생활의 적응을 돕고자하며, 동시에 수용자의 생활이 관리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규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고지해야할 사항에 관해서는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처우규칙, 의무내용, 권리내용을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에서는 권리내용, 불복신청의 수단이 명시되어 있다. 「최저기준규칙」은 두 국제규범보다 확장된 범위의 사항으로 두 국제규범의 고지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수집의 수단을 고지하여야 함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고지방법에 있어서도 세 국제규범의 미미한 차이가 있는데, 「최저기준규칙」은 서면고지를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가 문자해독을 못하는 경우에 구두고지를 허용하고,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서면고지와 구두고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용자가 원할 경우 서면고지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은 고지 방법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수요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덧붙여 MSW는 수용자에게 교정시설규율관련 문서를 제공하고, 관련사항을 포스터로 교정시설내 부착하며, 외국인 수용자를 고려하는 등의 적극적인 고지방법을 요구하고 있다[15)]

「최저기준규칙」 제61조에 따르면 사회로부터 수용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수용자의 외부와의 교통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이며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권장할 사항인 것이다. 다만 이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어야하며,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건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규제될 수 있는 것이다.

외부교통의 범위는 귀휴제, 외부통근제, 교화위원 또는 종교위원, 신문 등 여러 제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수용자의 신변상황을 외부의 가족 등에게 통지해주는 제도와 수용자가 외부의 가족 등과 서신이나 전화 및 면회 등을 통해 교통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국제규범을 분석해보았다.

수용자가 외부의 가족 등에 자신의 수용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것과 관련한 국제규범은 「최저기준규칙」 제44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4조,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 제16조이다. 이 세 가지 국제규범은 수용과 이송 등의 수용상황에 대한 통지를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은 수용과 이송의 구체적인 장소까지 통지하도로 요구하고 있다.

---

15) MSW 13

이는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수용과 이송의 사실만 알려주고 장소의 통지를 통제한다면 이 권리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지의 방법으로는 세 가지 국제규범이 공통적으로 수용자가 직접 통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니,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은 이에 덧붙여 관계당국이 통지해주도록 요구하는 방법과 소년수용자거나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수용자의 경우 관계기관이 직권으로 통지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통지 대상자는 세 국제규범 모두 외부의 가족이며,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에서는 수용자가 선택한 적절한 사람까지도 허용하는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통지의 시기에 관해서 세 가지 규범은 수용 또는 이송이 행해지면 즉시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억류·구금된 자의 보호원칙」에서는 수사를 위한 필요에 의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동안 통지를 지체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고려한 규정을 두었다.

수용자의 수용 및 이송에 관한 내용 이외에 통지하는 사안에 관해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수요자가 사망하거나 중병 또는 중상해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특정인(배우자, 가까운 친척, 수용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고정당국에서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수용자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다른 시설로 이송될 경우를,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수용자의 입원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또한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수용자가 통지 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는 통지에 예외로 두고 있으며, 수용자가 중병을 앓거나 중상해의 상황에 처한 경우 그 사실을 직접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용자가 자신의 수용상황에 대해 가족 등에게 통지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수용자 가족의 신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알려주는 것 또한 교정시설의 의무라고 「최저기준규칙」은 규정하고 있다.

외부와의 접견교통에 관한 수용자의 권리는 가족과의 접견교통과 가족 외 기타 접견교통으로 나눌 수 있다. 관련 국제규범으로는 「최저기준규칙」 제37조, 제39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4조,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 제15조, 제19조이다. 우선 수용자의 가족 접견교통에 대하여 세 국제규범에서는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의 측면에서 「최저기준규칙」은

‘일정 기간마다’라고 구체적인 기간의 간격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인 접견교통이 허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럽교정시설규칙」은 ‘가능한 한 자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최저기준규칙」보다 적극적인 접견교통을 실시할 것을 권하는 입장을 보인다.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에서는 수용자와 가족 간의 교통이 기본적으로 매일 허용될 수 있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거부되더라도 그 기간이 수일 간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접견통신의 방법으로는 세 국제규범 모두 ‘통신과 접견’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접견교통에 관하여서는 크게 ‘가족과의 접견교통’과 ‘가족 이외의 자와의 접견교통’으로 나눌 수 있다. 관련 국제규범은 「최저기준규칙」 제37조, 제39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4조,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 제15조, 제19조가 있다. 세 국제규범에서 공통적으로 가족과의 접견교통을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의 측면에서 「최저기준규칙」은 ‘일정 기간마다’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교정시설규칙은」 ‘가능한한 자주’라고 표현하여 「최저기준규칙」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에서는 한층 명시적으로 가족간의 접견교통은 기본적으로 매일 허용될 수 있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거부되더라도 그 기간이 수일 동안 지속되어서는 안 됨을 요구하고 있다.

접견통신 방법에 대해서는 세 규범 모두에서 ‘통신과 접견’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통신의 구체적인 방법을 서신, 전화 등으로 예시함과 동시에, 접견의 방법에 관해서도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증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용자의 접견교통의 제한에 대해서는 「최저기준규칙」은 ‘필요한 감독하에’ 접견과 교통이 이루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에서는 ‘법률 또는 법류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르도록 접견교통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두 규정은 제한의 사유와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수용자의 접견교통이 수사상 목적, 교정시설의 질서유지, 안전과 보안, 범죄예방, 범죄피해자의 보호 등의 사유로 제한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최소한의 접촉은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수용자와 가족이외의 자와의 접견교통에 대해서는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 모두에서 친구 및 외부단체 구성원 등과의 접견교통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최저기준규칙」은 허용대상자를 '신뢰할 만한 친구'로 한정하고 있으나,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외부인 및 외부단체 대표자", "법률에 명기된 국내 또는 국제단체 및 관련 임직원", "언론매체 등 대상자"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인 및 외부단체 대표자'와의 교류는 기간이나 방법 및 제한 사유 등에 있어서 가족과 동일하게 취급되는데 반해 그 외의 규정 대상자의 교류방법은 '통신'으로 한정시켰다. 또한 "법률에 명기된 국내 또는 국제단체 및 관련 임직원"과의 통신은 제한없이 허용이 되는지만, "언론매체 등 대상자"는 공공이익을 위해 제한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수용자 보호를 위한 기타사항으로는 수용자의 이송과 소유물 처리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최저기준규칙」 제45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32조에서는 수용자 이송시 ① 익명성 보장, ② 불이익 처우의 금지, ③ 이송시 소용되는 비용을 교정당궁에서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용자의 소유물 처리에는 「최저기준규칙」 제43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31조가 관련 국제규범이며, 양규칙에서는 수용자의 재산권 인정을 전제로 수용자의 소유물 중에서 교정시설에 반입한 물건은 어떻게 관리하고 석방 시에 돌려줄 것인지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소지가 허가되는 물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최저기준규칙」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수용자가 자신의 물품을 소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안전한 소지를 원조하기 위해 교정당국이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의 소유물로서 교정시설이 보관하도록 구분된 물품을 보관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양규칙은 보관물에 관한 명세목록을 작성하고 수용자의 서명을 받으며, 보관물을 양호한 상태에 두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최저기준규칙」은 의약품에 관하여,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음식과 음료수 및 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보관된 물품은 수용자가 석방할 때 원칙적으로 수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양규칙은 이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환의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품 영수증에 수용자의 서명을 받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수용자 석방시 반환 이외에 처리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수용기간 중 수용자의 금전을 인출해 주거나,

수용자의 요청에 의해 외부로 송부하기도 하며, 위생상의 사유로 문제가 될 경우는 폐기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공적 활동 참여에 관하여 「최저기준규칙」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교정시설규칙」제24조에서는 수용자에게 선거 등의 공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각 국가의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2. 권리구제와 감찰 등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규범의 내용으로는 '청원과 불복', '법률가의 조력', '감찰'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권리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청원과 불복인데, 청원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권리침해의 행위를 제거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며, 불복은 교정당국이 자신에게 내린 권리침해 관련의 판단과 조치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이 유용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수용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소요가 촉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원과 불복의 경로', '제3자에 의한 청원과 불복의 신청', '청원과 불복 신청의 처리'등 청원과 불복 관련 국제규범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청원과 불복은 어느 기관에 하는가에 따라 경로를 달리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교정시설의 소장이나 담당자에게 직접 제기하는 내부적 경로, 중앙교정당국이나 사법기관 등의 외부기관에 판단을 요청하는 방법인 외부적 경로, 조사를 받는 동안 조사관에게 제기하는 조사관 경로 등 3가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최저기준규칙」 제36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70조,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 제33조의 국제규범이 있다. 「최저기준규칙」규정은 위의 3가지 경로 모두 발견이 되는데 반해, 「유럽교정시설규칙」과 「모든 억류·구금된 자의 보호원칙」에서는 청원과 불복의 내부적·외부적 경로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자에 의한 청원과 불복의 신청에 관한 국제규범으로는 「유럽교정시설규칙」 제70조,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 제33조에 해당하며, 「최저기준규칙은」수용자 본인이 신청하는 규정만 있을 뿐, 제3자에 의한 신청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반면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제3자의 범위가 법률대리인과 법류단체 및 친척으로 국한시켰으며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은 시민단체 등은 불복의 신청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신청의 대상으로 불복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원의 경우 제3자의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의 복지에 관련된 불복의 신청에는 수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은 가장 전향적인 제3자의 청원과 불복의 신청권한을 부여하는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청원과 불복의 신청 권한을 변호인, 가족,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모든 자에게 인정하고 있다.

신청된 청원과 불복의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국제규범 「최저기준규칙」 제36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70조,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 제33조에 해당하며 '신속성의 원칙', '선중재의 방안 제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의 관련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법률가 조력 등의 국제규범으로는 「유럽교정시설규칙」 제23조, 제70조,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 제15조, 제18조, 「UN의 변호사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 제18조이다. 「최저기준규칙」은 법률가 조력의 대상이 미결수용자에 경우만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수형자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조력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타 국제규범에서는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수용자를,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에서는 억류·구금된 자를, 「UN의 변호사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에서는 체포·억류·구금된 자를 법률가 조력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

또한 법률조력 등을 받을 절차에 관해 「유럽교정시설규칙」은 내부적 불복과 외부적 불복(항소)의 절차 및 재판절차에서 법률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두고 있다. 법률상담에 대해서는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수용자가 법률상담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에서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자기의 변호인과 교통하고 상담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과 시설이 주어져야 하며,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변호인의 교통은 수일간 이상 거부되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수용자와 법률가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법

률상담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유럽교정시설규칙」과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뿐만 아니라 「UN의 변호사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에서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수용자가 자신의 소송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개인물품으로 소지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을 덧붙이고 있다.

교정시설의 정책과 실행이 법과 규칙에 합치되는지 및 형사적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업무를 감찰이라 한다. 각 교정시설은 감찰을 통해 수용자와 직원을 보호할 수 있고, 교정시설의 위험을 감지하여 더 심각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좋은 정책과 바람직한 관행을 인정하고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규범은 「최저기준규칙」 제55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9조, 제92조, 제93조,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 제29조이다.

어느 기관에서 교정시설의 감찰을 담당할지에 관하여 「최저기준규칙」은 '권한 있는 관청에 의하여 임명되고, 자격과 경험을 갖춘 감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교정시설규칙」과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은 감찰기관의 '독립성'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감찰사항에 관하여 「최저기준규칙」, 「유럽교정시설규칙」,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의 세가지 국제규범에서는 공통적으로 교정시설 운영의 합법성을 들고 있다. 덧붙여 「최저기준규칙」은 교정처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도 감찰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감찰시기에 있어서도 세 규범 모두 "예고되지 않은", "시간의 간격이 너무 떨어지지 않은" 정기적인 감찰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결과는 문서 형태의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국제규범에서 이를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감찰이라는 조치의 본질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부분이다. 또한 감찰보고서는 책임부처와 교정시설의 책임자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직원에게도 열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감찰한 결과를 일반에게도 공개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7절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미결수용자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미결수용자라고 하는데, 기결 수형자와 처지를 같이 하기는 하나 법적지위는 확연히 다르다. 아직 유죄판결을 바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무죄인 처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명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은「최저기준규칙」제84조이고, 더 나아가「유럽교정시설규칙」제95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미결수용자인 경우라도 가능성에 의해 무죄인 자로 처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을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제규범이 규정하는 특수한 처우의 내용을 '수용과 생활공간', '급식과 의류 및 의료', '교도작업과 교정처우', '물품구입과 접견교통' 등의 항목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미결수용자의 수용과 생활공간에 관한 내용은 수용의 형태에 관한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하여 구분수용 한하여야 함을「최저기준규칙」제8조 b항, 제85조,「유럽교정시설규칙」제18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시설자체를 분리하거나, 시설내에서 구역을 분계하여 구분수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자유권규약」제10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제규범에서 수용자 일반의 거실에 관하여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혼거수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결 수형자에 비해 미결수용자에게는 혼거수용의 예외사유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미결수용자의 수용거실에 관한 국제규범으로는「최저기준규칙」제86조,「유럽교정시설규칙」제96조이다. 즉, 양 규칙에서는 미결수용자의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혼거수용을 허용할 예외사유에 대해서는「최저기준규칙」은 자연적 여건,「유럽교정시설규칙」은 수용자 보호와 법원의 판단을 설정하고 있다.

급식과 의류, 의료 등에 관한 미결수용자의 국제규범을 살펴볼 때, 수용자 일반의 급식에 관하여서는 급식의 영양기준, 제공시간, 및 위생적 처리 등의 제반사항을 들어 국제규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결수용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최저기준규칙」제87조에서는 미결수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질서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비용으로 외부의 음식을 반입할 수 먹을 수 있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가 넣어주는 음식도 마찬가지로 허용하는 등의 사식의 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류의 문제는 미결수용자의 특수성이 비교적 강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다.「최저기준규칙」제88조,「유럽교정시설규칙」제97조에 따르면, 양규칙에서 자기 의류의 착용이 허용되며, 관제의류가 제공되는 경우라도 미결수용자의 관제의류는 기결수용자의 관제의류와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류를 착용하는 경우 사복은 청결하고, 수용시설에서의 착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도 명시하고 있다.

기결수형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의료체계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수형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제규범「최저기준규칙」제91조를 살펴보면,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외부 의료체계의 이용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미결수용자의 권리로 인정한다. 다만, 이때에 의료비용은 미결수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도작업에 있어서「최저기준규칙」제8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듯이 기결수형자에게는 의무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반해, 미결수용자에게는 의무로 주어지지 않는다.「유럽교정시설규칙」제100조에서도 미결수용자에게 작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도작업은 사회복귀와 건전한 수용생활의 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금지될 필요가 없으며, 이런 미결수용자를 배제하는 조치가 불이익 처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양규칙에서는 미결수용자에게 교도작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덧붙여「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수형자의 교도작업에 적용되는 지침들도 모두 미결수용자의 교도작업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도작업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직업훈련 등의 교정처우가 미결수용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유럽교정시설규칙」제101조는 미결수용자가 교정처우를 요구하는 경우에 교정당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정처우를 실행해 줄 것을 규정하였다.

미결수용자의 물품구입과 접견교통에 관한 국제규범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결수형자는 물품구입이 권리로 보장되지 않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롯된 미결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물품구입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는 「최저기준규칙」 제90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물품구입을 할 수 없으며, 구입이 허용되는 물품은 서적, 신문, 필기용품, 기타 소일거리 물품이다. 또한 물품구입 시 비용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사비로 부담된다.

가족이나 친지등과 수용자는 교통하고 접견할 수 있으며,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에 대하여 특칙을 마련하였다. 「최저기준규칙」 제92조는 미결수용자는 자신의 구금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통신하고 접견하는데 필요한 편의가 전부 제공되어야 하며, 가족등과의 접견통신에 제한과 감시를 가할 수 있는 사유는 재판 및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한 경우로 국한되어야 한다. 동규칙에서 수용자 일반의 접견통신에 대해서는 '필요한 감독'이 행해질 수 있다고 전제하지만, 미결수용자의 접견통신에 대한 제한은 '재판 및 시설의 안전질서'로 한정하고 있다. 「유럽교정시설규칙」 제99조는 미결수용자는 가족 및 그 밖의 사람들과 접견하고 교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며, 기결수형자에게 제공되는 접견교통의 기회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접견교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접견교통에 대한 제한은 사법기관으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특별한 금지를 결정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마찬가지로 동규칙의 수용자 일반에 대한 접견교통의 경우와 비교하면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은 기회가 추가될 뿐 아니라, 제한의 사유에 있어서 수용자 일반에 대해서는 '수사상 목적,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보호'등의 재량판단 사유가 설정되지만, 미결수용자의 경우 '사법기관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약하고 있다.

미결수용자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단계이거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법류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국제규범 「최저기준규칙」 제93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98조,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 제17조의 규정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세 국제규범에서 공통적으로 ① 미결수용자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② 국제규범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미결수용자에게 허용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예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최저기준규칙」은 변호인의 방문, 비밀문서 전달이 가능하며, 희망하는 경우 필기도구가 지급된다. 「유럽교정시설규칙」과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데 필요한 또는 적절

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③ 국제규범은 변호인 조력의 권리를 미결수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유럽교정시설규칙」은 명시적 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은 체포 즉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기준규칙」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최저기준규칙」과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에서는 ④ 국제규범은 미결수용자에게 무료의 법률구조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교정시설규칙」은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규정을 별개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수용자 일반에 대한 무료의 법률구조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의 점에 있어서 다른 국제규범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최저기준규칙」은 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감시하는 방법과 관련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가시거리의 감시만 허용될 뿐 가청거리의 감시는 금지한다. 아울러 「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은 수용자 일반의 변호인 접견에 가청거리 감시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결수용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2. 소수수용자

소수수용자에 관한 국제규범 내용 분석은 정신이상 수용자와 외국인 수용자의 범주로 살펴보았다.

외부에 격리된 공간, 사회로부터의 배척, 단조로운 수용생활 등의 이유로 교정시설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에 정신이상 수용자를 특별 관리하는 지침이 필요하게 되는 바, 「최저기준규칙」 제82조, 제83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12조, 제47조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규칙 모두 ① 정신병자 내지 정신적 결함이 있는 수용자를 별개의 전문시설에서 치료하도록 요구한다. 전문시설에 관하여 「최저기준규칙」은 외부의 정신과 의료시설, 교정체계내 설립된 전문시설을 요구하였으며, 「유럽교정시설규칙」 '특별한 그러한 수용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에 수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② 정신이상 수용자가 통상의 교정시설에 구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다. 「최저기준규칙」은 수용자가 통상의 수용되고 있는 동안은 의무관의 특별 감독 하에 있도록 요구하며, 「유럽교정시설규칙」은 해당 수용자의 상태와 필요로 하는 것 등을

고려한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일반 수용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학적 치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치료프로그램은 교정시설의 보건의료 담당부서가 관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수용자의 자살방지를 위한 특별한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하여 차별금지, 규칙 등의 고지, 의사소통, 영사 등과의 접촉, 종교와 문화의 존중 등의 분야에서 국제규범의 명시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국제규범이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차별금지'이다.「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한 권고」는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지정을 국적에만 기초하여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수용지정의 일반적 변수가 외국인 수용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또한 외국인 수용자에게도 내국인 수용자와 동일한 비중을 두어 교육, 작업,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석방과 공식적인 외출 및 구금대용 처분의 실시에도 내국인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원칙이 외국인 수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지정, 교정처우, 석방 등에서 내국인 수용자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수용자도 내국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입소와 동시에 교정시설의 규칙과 수용자의 권리 등의 사항에 대한 고지가 행해져야 함을 국제규범「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한 권고」와「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제14조에서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수용자에게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교정시설의 규칙 등을 고지할 것과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고지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의 직원과 외국인 수용자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국제규범으로는「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한 권고」에서는 외국인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지침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여타의 국제규범을 살펴보면 ① 교정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해당 교정시설의 가장 많은 수용자가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최저기준규칙」제51조,「유럽교정시설규칙」제87조에서 요구한다. 또한「최저기준규칙」제51조,「유럽교정시설규칙」제38조,「모든 억류·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원칙」제14조에서 공통적으로 ② 외국인 수용자에게 통역을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과 통신·접견할 가족과 친지가 국내에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회와

의 교통을 위해 외국인 수용자에게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최저기준규칙」 제38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37조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해 ① 소속 국가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의 교통이 허용되어야 하고, ② 해당 외국인 수용자가 그러한 외교대표와 영사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않은 국가의 소속이라든지 망명자나 무국적자인 경우라면 수용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가의 외교대표라든지 국제기구와의 교통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억류·구금된 자의 보호원칙」 제16조와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한 권고」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보장원칙에 덧붙여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영사 등과 접촉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이 고지되어야 하고, 접촉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외교대표 등과 협력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한 권고」에서도 교정시설은 외국인 수용자에게 영사 등과 접촉을 요구할 권리를 고지하여야 하며, 영사관으로부터 조력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우편이 즉시 송달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수용자는 종교와 문화에 있어서 내국인 수용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국제규범은 종교와 문화의 면에 있어서 다른 것을 다르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한 권고」는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와 관습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38조는 교정시설 내에서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 관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제8절 교정시설의 조직과 직원

「유럽교정시설규칙」 제71조와 제72조에서는 교정시설 조직은 운영하는데 있어 독립성 보장과 윤리성 추구라는 두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독립성 보장원칙은 경찰, 군 등의 다른 유사기관의 개입으로 인해 교정처우의 본래 목적이 손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윤리성 추구원칙은 수용자를 인도적이고 존엄하게 처우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정시설 조직의 운영은 어느 정도 규모의 수용자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우선, 교정시설의 적정 수용인원에 대해 「최저기준규칙」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규모는 적당한 설비의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세부적으로는 폐쇄 교정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은 개별처우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한정하여야 하며, 500명의 상한선을 둔 몇몇 나라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개방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경우 가능한 한 소수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정시설 운영전반을 관장하는 소장에 관한 국제규범 「최저기준규칙」 제50조와 「유럽교정시설규칙」 제84조를 살펴보면, 소장의 자격, 근무유형, 거주지, 복수관장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장의 자격으로는 양규칙에서 직무를 감당하기 충분한 ① 성격(인격), ② 행정능력, ③ 적절한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동일한 내용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양규칙에서 소장은 상근직으로, 직업적 활동의 전 시간을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덧붙여 「최저기준규칙」은 교정시설 구내 혹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해야한다는 소장의 거주지까지 제한하였다. 또한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장이 하나 이상의 교정시설을 관장하는 경우에는 각 교정시설에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양규칙이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준수사항이며, 나아가 「최저기준규칙」은 소장이 각 교정시설을 자주 순시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수용자 처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교정시설의 직원 관련 국제규범에서는 교정직원의 선발 기준 및 처우, 직무교육, 사명과 행동지침, 구성 등을 다루고 있다. 우선 국제규범 「최저기준규칙」 제46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2조에서는 교정시설 직원 선발 기준과 처우에 관한 내용인 직원의 ① 선발, ② 근무유형, ③ 보수와 복리, ④ 근무조건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① 교정직원의 선발에 관해 양규칙에서는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은 성실성, 인간성, 업무능력, 적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교정업무는 일상적 업무가 반복되는 특성과 범죄인이라는 특수집단을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성실함과 적합성이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요구된다. 나아가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직원의 선발에 있어서 '평등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중요한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근무자 권고사항」 제9조에서는 교정직원의 채용이 국가의 행정체계 내에

서 이루어지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② 교정직원의 근무유형은 소장과 마찬가지로 상근의 직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고용의 안정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교정처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근무자 권고사항」 제4조, 제5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교정직원의 보수와 복리에 관해서 양규칙은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공통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장 할 때, 교정직원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뇌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정직은 긴장이 조성된 특수한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업무가 주어지는 힘든 직종이기 때문에, 양규칙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직원의 복리와 ④ 근무조건에 반영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덧붙여 「근무자 권고사항」 제6조에서는 직원들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줄 것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처우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위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발된 교정직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에 대해서도 국제규범은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최저기준규칙」 제47조, 54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8조, 81조, 제66조이다. 양규칙에 따르면, 교육의 종류는 크게 ①신규교육과 ② 계속교육으로 구분되는데, ① 신규교육에서는 일반적 임무와 특수 임무에 관한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론과 실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정직원은 적정한 기간의 간격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하는 ② 계속교육의 의무도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무자 권고사항」 제16조, 제22조에서 보다 자세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내용으로는 양규칙에서는 공통적으로 공격적인 수용자를 제압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훈련 대상자에 대해 「최저기준규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수용자를 직접 처우하는 직원에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모든 직원이 교정처우에 관한 국제규범을 교육 받아야 하며, 외국인, 여성, 미성년자, 정신질환자와 같은 특수한 수용자의 관리를 담당하는 교정직원은 특수업무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근무자 권고사항」 제17조에서는 보안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교정직원의 사명에 관한 국제규범 「유럽교정시설규칙」 제72조에 따르면 교정제

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교정직원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정직원의 행동지침에 대해서는 국제규범 「최저기준규칙」 제48조와 「유럽교정시설규칙」 제72조, 제75조에서 규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교정직원은 수용자에 대한 긍정적 차원의 권위가 요구되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적 행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나아가 고도의 직업적·개인적 규범 아래 행동할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교정직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최저기준규칙」 제49조, 제53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89조,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정직원 구성 시 정신분석전문가,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직업기술 지도사 등 ① 특정분야의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양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체육지도사의 구성을 추가하였다. 또한 양규칙에서는 ② 여성 직원의 확보를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최저기준규칙」은 여성수용자의 관리를 여성직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교정시설규칙」은 남성직원과 여성직원의 균형 있는 구성의 필요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여성직원의 확보를 위한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

제9절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규범

1. 소년수용자

소년수용자에 대한 국제규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중심으로 소년수용자의 기본원칙, 수용질서, 기본적 생활, 사회복귀, 권리구제, 직원 등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의 국제규범에서 소년수용자의 기본원칙에는 ① 소년사법체계의 역할, ② 구금의 제한, ③ 소년의 권리 보장, ④ 규칙의 고지, ⑤ 소년범죄자 사회복귀의 의미 전파, ⑥ 구금소년들의 잠재성 계발을 위한 노력 등이 해당된다.

소년사법체계의 역할에 관한 국제규범을 살펴보면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

를 위한 규칙」 제1조의 형사사법체계에 들어온 소년들에 대한 모든 절차와 결정은 처벌이나 지역사회 보호보다 소년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재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국제규범으로는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소년사법운영을 위한 최저기준규칙」 제26조 1항이다.

구금의 제한에 관한 국제규범은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2조이며, "베이징 규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만 구금될 수 있다"고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즉, 국제규범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구금의 최소화 및 최단기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4조와 제13조는 소년수용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년수용자에게는 어떠한 차별 없이 공평하게 위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종교, 문화적 신념, 도덕관념 등이 존중되어야 하며, 소년수용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국내법, 국제법 등에 명시된 다른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소년수용자들이 자신의 권리의 내용을 잘 인식하고, 그로인한 적극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규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6조에서는 이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수용자에 대한 엄벌주의적 여론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형벌작용이 사회 안전보장을 촉구한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소년범을 교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접촉이 소년수용자에게는 필요하다고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8조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소년수용자에 대한 구금의 목적에 대해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구금을 통해 "건강과 자기존중 등을 촉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프로그램이 제공이 보장되어 인격과 행동교정을 통한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수용자의 수용질서에 관한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의 국제규범은 ① 기록의 비밀보장, ② 구금소년의 정보와 권리고지 등, ③ 성인범죄자와의

분리, ④ 소년교도소의 규모, ⑤ 계구와 강제력의 제한, ⑥ 징벌절차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19조에는 소년수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규칙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는 구금시설에 소년수용자의 입소와 관련한 규정들인데, 소년수용자의 구금, 이송, 출소 등에 대해서 부모나 법적 후견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입소시 소내 생활 및 교도소의 규율, 징벌, 진정, 청원절차 등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언어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번역, 통역 등의 서비스가 보장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35조에도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있다.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29조에는 소년수용자는 성인수용자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소년수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준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만 성인수용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예외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7조 c항, 「베이징규칙」 제26조 3항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소년수용자를 위해서 개방교도소나 최소한의 보안등급을 가진 교도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을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별처우가 가능할 만큼의 수”로 작은 규모의 소년교도수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규칙 제64조와 제65조에서는 소년수용자에게 강제력이나 신체제한 장비를 사용할 경우는 법률에 근거하여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훈련된 직원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년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등 징벌절차와 관련해서는 동규칙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징벌보다는 회복사법적 갈등해결과 교육적 지도를 우선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징벌과 관련한 규정은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하며, 소년수용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맹이나 학습장애 등의 소년수용자의 경우는 대면설명을 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징벌을 진행 할 때 소년수용자는 자신에 대한 변호의 기회 및 징벌에 대한 항소 권리를

부여야 한다. 이러한 징벌관련 기록의 보존도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국제규범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국제규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에서 소년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는 ① 시설환경, ② 개인물품소지, ③ 급식과 영양, ④ 운동과 오락, ⑤ 의료서비스, ⑥ 정신건강, ⑦ 의약품처방이 해당된다.

소년수용자 교정시설의 시설환경에 관한 국제규범은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이며, 구금된 소년수용자들의 건강, 인간존엄이 충족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재활적 목적, 사생활 보호 등이 가능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화재 등의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시설이어야 하며, 실전연습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년수용자의 거실은 소규모 기숙사 형태나 개인 침대, 침구 등이 제공되고, 청결히 유지되어 적절한 수면권이 보장 될 수 있어야 한다. 화장실은 신체적 욕구에 적합하며, 사생활 보호 및 수치심이 유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형태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국제규범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설환경과 관련하여 UNODC의 『소년범죄자를 위한 사법』에서는 환기, 조명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소년수용자의 개인물품 소지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35조, 제36조에서 규정내용을 볼 수 있다. 개인용품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소지불가능한 물품인 경우 교정시설에서 적절히 보관하였다가 출소시 반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류를 사용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계절에 맞는 의복 제공 및 출정 및 외부출입이 있을 경우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복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동규칙 제37조에서는 소년수용자에게 적절한 음식과 식수가 제공되어야 하며, 문화적, 종교적 신념이나 의료적 처우 등으로 인한 식단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수용자의 운동 및 오락 등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된 국제규범은 동규칙 제47조에 해당하며, 날씨가 허용하는 한 개방된 공간에서 신체적 운동 및 놀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공간, 장치, 도구 등이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이는

「최저기준규칙」 제21조 1항에서도 수용자의 운동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놀이 등의 여가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예술, 만들기 등의 활동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소년수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치과, 안과, 정신과, 약품, 처방받은 식이요법 등 예방적·치료적 의료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외부병원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에 의한 의료적 처우의 제공이 소년수용자의 사회복귀에 용이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동규칙 제53조에서는 소년수용자의 정신과 치료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베이징규칙」 제26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소즉시 소년수용자는 의사에 의한 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입소전 병력, 이상증세 등을 확인하여 기록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재사회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신체적 질병, 정신건강상의 문제, 약물남용 등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권고한다. 약물예방과 관련 프로그램이 소년수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중독 소년수용자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전문의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모든 교정시설은 적절한 치료 장비 및 훈련된 의무관이 배치되어야 하며, 응급상황의 소년수용자는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사는 소년수용자가 구금, 단식농성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 및 정신건강 문제 대해 인지하면, 시설의 장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독립기관에 이를 알릴 책임이 부여된다. 이러한 소년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한 다른 국제규범으로는 「아동권리협약」 제24조가 있다.

치료를 소년수용자에게 강요하여서는 안 되며, 의약품 처방 시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것을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동규칙 제56조, 제57조, 제58조가 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소년수의 가족, 지정 보호자에게 소년수용자의 사망, 질병으로 인한 외부병원 이송, 48시간 이상 의무실에 있을 경우 등 소년수용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려야 하며, 외국소년의 경우는 대사관에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소년수용자가 시설내 또는 출소후 6개월 이

내 사망했을 경우는 사망에 관한 사유의 증명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구금과 관련한 사망에 대한 가능성 때문이다.

소년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대한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은 ① 개별처우와 분류, ② 학과교육, ③ 직업훈련, ④ 작업, ⑤ 종교, ⑥ 외부교통, ⑦ 사회복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규칙 제27조, 제28조에 따르면, 신입 분류심사를 통해 소년수용자의 보안과 처우의 등급을 결정하게 되며, 개별화된 처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상, 의료,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욕구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국제규범은 동규칙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해당하며, 교도소외부에 있는 학교 교사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소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맹, 학습장애 등의 소년수용자의 경우는 특수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의무교육연령이 지난 소년수용자가 학업을 희망할 경우에도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도 소년수용자에 대한 동등한 교육의 기회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공된 교육을 통해 이수 받은 자격증이나 학위증에 교도소 수용 경력이 드러나서도 안 된다. 또한 교과과정에 필요한 도서나, 취미를 위한 책 또는 정기간행물을 보유한 도서관이 운영되어 소년수용자들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교육과 함께 직업을 위한 기술과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것은 재범방지와 사회재통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규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42조, 제43조에서는 소년수용자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와 교정시설 여건에 따른 직업선택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요구된다.

소년수용자의 작업과 관련된 국제규범은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44조, 제45조, 제46조이며, 아동노동 및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국내외법이 소년수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덧붙여 「아동권리협약」 제32조에 따르면, 경제적인 착취, 위험한 일, 교육을 방해하는 방식의 노동을 소년수용자에게 강요해서는 안되며, 직업훈련의 연장선으로 간주되어 출소후에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의 위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48조는 소년수용자들의 종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것에 관한 요구를 포함한 내용의 규정이며,「아동권리협약」 제14조,「최저기준규칙」 제41조, 제42조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권고하고 있다.

소년수용자의 외부교통과 관련한 국제규범은「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이며, 소년수용자가 외부와의 접촉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 주기적인 접견을 가질 권리, 서신 및 전화를 발신, 수신할 수 있는 권리, 신문, 잡지, 서적 등을 읽거나, 라디오, TV등을 시청할 권리 등의 다양한 외부교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소년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의 국제규범에서는「베이징규칙」 제26조 제5항에서 가족, 보호자가 소년수용자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아동권리협약」 제37조, c항에서는 소년수용자가 서신, 접견 등을 통한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최저기준규칙」 제37조에서도 수용자의 접견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소년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규범「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에서는 소년수용자 교정시설에 대한 ①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과 ② 청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금된 소년수용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찰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정부기관에 의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명시하고 있는「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은 제72조, 제74조이다. 이에 따르면 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은 감독대상기관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형태이어야 하며, 정기 점검 뿐만아니라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소년수용자들은 교도소소장에게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에 규정하고 있다. 청원 및 진정시 내용 및 형식이 검열되어서는 안되며, 비밀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권리 및 절차 내용을 소년수용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국제규범「최저기준규칙」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수용자들은 입소시 자신의 권리와 의무, 청원 방법 등을 문서로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년수용자에게도 적용 받을 수 있는 권고 내용이다.

소년수용자의 교정시설을 구성하는 직원에 관해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의 국제규범에서는 ① 직원의 전문성, ② 소장의 자격, ③ 직원의 자세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의 규정에서 소년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그 발달단계에서의 욕구와 생각 등을 처우에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원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복적인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유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년수용자 교정시설 소장에 대해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86조에서 "자격 있고, 행정능력을 갖춘, 정규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시설의 직원들은 소년수용자의 특수성, 즉 연령적, 발탈적 특성, 심리적, 정서적 욕구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 가능한 직무훈련이 실시되어야 하며, 아동심리, 아동복지, 국제인권기준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함을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제87조에서 세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2. 여성수용자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방콕규칙)」을 중심으로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원칙, 수용질서, 기본적 생활, 사회복귀, 청원 및 감시, 직원, 출소준비와 사후지원, 특수범주 등의 범주의 국제규범을 살펴보았다.

국제규범에서 여성수용자 처우의 기본원칙에 관한 내용으로는 차별배제의 원칙과, 여성수용자의 특수한 욕구를 고려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교정시설은 다수의 남성수용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수용자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성수용자들이 국제규범의 적용을 남성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남성수용자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를 동일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성의 특별한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처우가 최저기준규칙의 차별배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의

의미는 남녀수용자들 간에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공정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 제1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남성수용자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 제2조에서는 여성수용자들의 취약성에 중점을 두어 가족과의 만남, 법률적 조력, 교도소 규칙에 대한 고지 등 적절한 처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수용자의 교정시설내 수용질서에 관한 사항으로는 수용시설 배치, 신체검사, 징벌적 격리, 신체제한장치, 평가와 분류 등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성수용자의 교정시설 배치 및 이송 시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여성교도소에 수용될 경우 가족과의 관계나 자녀와의 만남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여성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 제4조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서는 여성수용자의 신체검사에 관한 국제규범이다. 여성수용자의 몸을 수색할 경우 “여성 직원에 의해, 여성수용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방식” 또는 “스캔 등과 같은 대안적 방법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럽교정시설규칙」 제54조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율위반 행동에 대한 징벌로써의 격리나 독거 구금은 모든 수용자에 대해서 가장 최단기간동안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써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신수용자, 영어수용자, 모유수용자”에게는 이러한 징벌로서의 격리조치를 해서는 안 됨을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 제22조에 명시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33조, 제34조에서 이송중 도주방지, 의료적인 이유, 자해나 기물파괴 예방 등의 사유 시에는 징벌도구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수용자의 출산전후에 신체구속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 제24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정 전체에 걸쳐 신체구속 장치를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수용자의 개별처우를 위한 「최저기준규칙」 제63조에서는 분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67조에서는 분류의 목적을 교정교화와 교도소 질서확립에 두고 있기는 하나 실제 여성수용자에게 적용될 시에는 실질적인 차별이 있다. 따라서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 제40조, 제41조는 기존의 성중립적인 분류도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해야 하고, 여성수용자들의 위험성에 대한 분류를 위해서는 여성고유의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분류도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에 관한 국제규범의 내용은 개인위생, 입소시 건강검진, 여성고유의 의료적 욕구, 정신건강, 약물남용과 치료 프로그램, 자살과 자해예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정시설내 위생상태를 유지한 것과 관련하여 「최저기준규칙」 제15조는 “수용자들은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과 청결에 필요한 물과 위생용품의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교정시설규칙」 제19조 제7항에서는 “여성의 위생에 대한 욕구를 위한 특별한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특별한 위생적 욕구를 갖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용품을 충분히 제공할 것을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입소시 모든 수용자의 의료진단과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 이전의 구금동안에 성적인 학대나 다른 형태의 폭력의 진단을 받은 여성수용자의 경우 조사를 위해서 즉시 사법기관에 보고되어야 하며, 해당 여성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정시설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신의 의료기록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가지며, 유아대동 여성수용자의 경우 소아과 전문의에게 건강진단을 제공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규범으로는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가 해당된다.

여성수용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는 여성들의 의료적 욕구를 반영한 성인지적 프레임이 필요하며,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수용자를 위한 부인과 전문의를 시설내에 영입하거나 정기적 방문을 통한 의료처치가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남성수용자에 비해 여성수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건강 치료와 회복프로

그램을 마련하거나, 교정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정신건강을 위한 요소가 반영될 것을「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제12조, 제13조에서 권하고 있다.

여성수용자 중 약물중독자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교정시설에 수용이 되면 어느 정도 지역사회와는 거리를 두고, 낙인의 두려움을 감소키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를 제공할 것을 국제규범「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자살과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여성수용자들의 고유한 욕구와 심리사회적 특성, 정신과적 지원을 통해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료적 처우에서 나아가 구금된 환경은 여성수용자들에게 HIV, 기타 성병, 여성건강과 관련된 여러 정보 등에 관한 예방적 보건의료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제17조, 제18조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외부세계와의 적절한 관계유지는 구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요수이다. 따라서「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44조에서는 여성수용자가 가족의 지원을 느끼며 구금생활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녀와의 만남, 부부의 만남 등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원거리 가족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문기간 연장 또는 가족에게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자녀와의 만남은 항상 개방적이어야 하며, 편안한 환경에서 사적인 대화가 가능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교도소나 사동의 운영을 점검하거나 여성수용자 처우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감시단에는 여성고육의 욕구와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여성감시단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국제규범「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제25조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제29조에 걸쳐 제35조까지는 여성수용자를 감독하고 처우하는 여성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결정권을 가진 조직의 상부에서의 변화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수용자가 출소 후 직면하는 어려움과 장애를 고려하여 출소전후에 걸쳐 종합적인 재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방교도소, 중간처우시설과 같은 시설을 활용할 것을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 제43조,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출소 이후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역사회 단체, 보호관찰기관, 사회복지 당국 등이 협조를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 제46조, 제47조에서 요구하고 있다.

교정시설내 여성수용자의 출산 전후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지원과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 제42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임신여성, 출산여성에 대해 영약학적 의료지원 및 유아동반 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제공되어야 하고, 그 자녀에게는 수용자 처우가 아닌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수용자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위한 원칙」의 국제규범에서는 10대 소녀 수용자들을 위한 규정도 마련해 두었는데, 동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가 해당 국제규범이다. 10대 소녀 수용자들이 소년수용자들과 동등한 교육기회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연령, 성 등의 특화적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받아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성학대, 폭력 등의 상담 뿐만 아니라 부인과적 검진 등의 처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임신한 소녀수용자의 경우 성인수용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제10절 결론

지금까지 교정 관련 국제규범을 사항별로 나누어 분석·정리하였다. 특히 「최저기준규칙」과 「유럽교정시설규칙」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는데, 양 규칙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면, 전자보다 후자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유럽교정시설규칙」의 제정 작업이 유엔에서 「최저기준규칙」의 개정시도가 실패하게 되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교정 분야의 입법과 실무를 견인할 국제규범으로는 「최저기준규칙」 뿐 아니라 「유럽교정시설규칙」의 내용을 중요하게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덧붙일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교정 관련 국제규범은 대부분 연성의 국제규범이다.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연성의 국제규범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준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더욱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위상을 확보하려면 유엔 등이 요구하는 국제규범은 먼저 준수하는 정책이 요청된다. OECD의 회원국이면서 GDP 기준 세계 10위 내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교정 관련 국제규범은 경성이든 연성이든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정책이 유익할 뿐 아니라 타당한 일이다.

나아가 교정 분야에서의 국제규범은 적정 내지 최대한의 요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준칙임을 환기할 필요도 있다. 대표적으로 「최소기준규칙」은 각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설시하고 있을 뿐이다. 「유럽교정시설규칙」 역시 마찬가지이며, 기타의 교정 관련 국제규범에서도 최소한의 지침이라는 스탠스는 공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규범의 요구를 반영하였다는 수준만으로 교정의 선진화가 주장될 수는 없는 일이다. 교정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러한 진일보의 내용들을 교정의 입법과 실무에 접목시키는 일은 올바르고 바람직한 교정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청이다. 국제규범의 요구를 필요조건으로 삼되, 그보다 앞선 교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선진적인 교정의 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모델규범으로 제시한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해야 할 것 같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동 규칙은 채택된 국제규범이 아니다. 하지만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가장 발전적인 규범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동 규칙 역시 적극적으로 우리의 교정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판단이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최영신 · 이승호 · 윤옥경 · 금용명

제3장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제1절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교정 현실에서 교정처우 전반은 물론,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와 관련하여 해당 국제규범의 규정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 그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의 세부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세부 영역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국제규범의 이행수준을 평가하였다. 교정처우에 대한 점검은 국내법규의 이행실태와 교정실제의 이행실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국제규범의 세부 조항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국제규범의 해당 내용이 국내법규에 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동시에 교정의 실제사태는 이러한 법규정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이러한 점검에 근거하여 우리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이 미비한 처우영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지,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소녀수용자와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정처우와 관련하여 입법 미비로 인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우리의 교정처우가 국제적 기준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기준 국제규범으로 삼고 있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침에 해당한다.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의 충실한 이행을 거쳐서 교정처우의 선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교정시설규칙」의 이행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형사사법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교정처우의 영역별 주요 내용에 따라서 국제규범의 분석, 국내법규의 분석, 교정 실제의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제규범의 분석

우선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국제규범을 선정하여 각 국제규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정처우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을 기준이 되는 국제규범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고, 소년수용자 처우에 대해서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에 관한 규칙」(아바나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을, 여성수용자 처우에 대해서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방콕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을 기준 국제규범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나. 국내법규의 분석

국제규범의 분석을 위해 사용한 교정처우의 하위영역 구분은 국내법규의 분류에 그대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국내법규는 교정처우와 관련된 법조문이 포함된 법률,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이다.

분석 대상 국내법규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65호, 2011.7.18.,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397호, 2014.6.25.,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31호, 2014.11.17., 일부개정)이 중심을 이루며, 이외에도 교정처우와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련 법규들을 교정처우의 하위영역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42호, 2013.1.28.,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교도관직무규칙」(법무부령 제679호, 2009.11.9., 타법개정), 「보안야간근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을 보완적으로 이용하였다.

다. 교정 실제의 점검을 위한 연구방법

국제규범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교정처우의 실제사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아래의 네 가지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교정시설 대상 서면조사’, ‘교정처우 관련 법무부예규 및 훈령 등의 분석’, ‘선행 실태조사 자료의 활용’,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 결정례 분석’이 그것이다.

3. 기준 국제규범의 의미와 성격

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의미와 성격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16], 이하 「최저기준규칙」이라고 함)은 1955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회 유엔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The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이하 '범죄방지회의'라고 함)에서 결의되었고, 1957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명실 공히 국제규범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각국은 「최저기준규칙」의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규칙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 규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된 권고(recommendation) 형식의 국제규범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나.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에 관한 규칙」(아바나 규칙)의 의미와 성격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에 관한 규칙」(아바나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17])은 1990년 9월 아바나에서 개최된 제8회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 회의'에서 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14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국제규범으로서, 일명 「아바나 규칙」이라고 불린다.

다.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방콕규칙)」의 의미와 성격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방콕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and Non-

16) UNODC 홈페이지 참조(https://www.unodc.org)
17) UNODC 홈페이지 참조(https://www.unodc.org)

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18])은 아직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서 국제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여성수용자와 여성범죄자에 대하여 양성평등적(gender equality) 처우를 위한 기준과 원칙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수용자 처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제2절 교정처우의「최저기준규칙」이행실태의 평가

여기에서는「최저기준규칙」을 기준으로 교정처우의 영역별로 관련 국내법규의 이행실태와 교정실제의 이행실태를 평가한다.

1. '수용질서'의 이행실태 평가

다음의 <표 3-1>은 국제규범 이행실태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수용질서와 관련된 세부 항목별로 국내법규와 교정실제가「최저기준규칙」의 조항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한 것이다. 이행수준은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는데, '○'(양호)는 해당 항목의 국제규범을 80%이상 이행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ㅁ'(대개 이행)은 해당 국제규범을 60%이상~80%미만 이행하는 수준이며, '△'(불충분)는 해당 국제규범을 30%이상~60%미만 이행하는 수준이며, 'X'(불량)은 해당 국제규범을 30%미만 이행하는 수준이다.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와 관련된 수용, 보안, 규율과 징벌과 관련하여「최저기준규칙」을 기준으로 국내법규의 규정내용이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를 살펴보면, <표 3-1>에서와 같이 국내법규의 내용은 수용지역, 교정시설내 외부 인력의 투입, 징벌결정시 수용자의 관여금지 등 세 가지 규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최저기준규칙」의 수준을 상회하는 것을 나타난다.

먼저, 수용과 관련하여 국내법규는 기결과 미결, 연령, 범죄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및 처우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구분된 시설 또는 시설 내의 구역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지역과 관련하여서는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등에 관한

---

18) UN홈페이지(http://www.un.org/)참조

지침>에서 조직폭력사범과 마약류 사범을 제외하고 가급적 수용자의 연고지에서 가까운 교정시설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60조).

〈표 3-1〉 '수용질서'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내용 구분		「최저기준규칙」	국내 법규	교정 실제
1. 수용	1. 수용지역	해당 규정 없음	X	○
	2. 구분수용 2-1. 법적신분에 따른 구분수용	제8조	○	○
	2-2. 성별에 따른 구분수용	제8조	○	○
	2-3. 연령에 따른 구분수용	제8조, 제85조 제2항	○	□
	2-4. 위험성에 따른 구분수용	제63조 제1항, 제2항	○	□
	2-5. 기타의 구분수용	제8조	△	-
	3. 등록	제7조 제1항, 제2항	○	○
2. 보안	1. 검사	해당 규정 없음	○	○
	2. 보호장비	제33조, 제34조	○	□
	3. 강제력과 무기 3-1. 강제력행사의사유와 한계	제54조 제1항	○	-
	3-2. 강제력 행사의 절차	제54조 제1항	○	○
	3-3. 외부 인력의 투입	해당 규정 없음	X	-
	3-4. 무기의 사용	제54조 제3항	○	○
3. 규율과 징벌	1. 규율	제27조	○	○
	2. 징벌원칙 2-1. 징벌법정주의	제29조, 제30조 제1항	○	-
	2-2. 이중징벌 금지의 원칙	제30조 제1항	○	-
	2-3. 징벌절차	제30조 제2항, 제3항	○	○
	3. 징벌의 제한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	○
	4. 수용자의 관여금지	제28조 제1항, 제2항	X	○

이행 수준: ○: 양호(80% 이상 이행), □: 대개 이행(60% 이상~80% 미만 이행),
△: 불충분(30% 이상~60% 미만 이행), X: 불량(30% 미만 이행)

그리고 교정시설의 보안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으면서 자체의 인력으로 통제가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외부 인력의 투입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교

정시설내에 대한 외부인력의 투입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규율과 징벌에 대한 국내법규의 규정은 그 이전의 행형법과 비교하여 2007년「형집행법」 개정시 대폭 강화된 분야이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준수해야 할 규율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받는 징벌의 상한을 법정하고 징벌위원회 위원에 외부 민간인 참여를 규정하는 등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있다.「최저기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자에 의한 수용자의 통제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징벌위원회의 구성원에는 수용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 3-1>에서 '수용질서'와 관련된 세부항목의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살펴보면, 세부항목 21개 중에서 평가 항목이 아닌 5개 항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항목에서「최저기준규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개 항목('수용지역', '법적 신분에 따른 구분수용', '성별에 따른 구분수용', '등록', '검사', '강제력 행사의 절차', '무기의 사용', '규율', '징벌절차', '징벌의 제한', '수용자의 관여금지')은「최저기준규칙」의 이행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단지 세 가지 항목(연령에 따른 구분 수용, 위험성에 따른 구분수용, 보호장비)에서만 이행수준이 '대개 이행'으로 평가되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에 따른 구분 수용'을 보면, 국내법규는 잘 정비되어 있지만,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의 연령에 따른 구분수용을 구현하는 데에 약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최저기준규칙」제85조 제2항은 "미성년의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원칙적으로 별개의 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미결 소년수용자의 구분수용 실태를 보면, 전체 소년 미결수의 95% 정도(370명)가 전국 43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분리수용되어 있어, 이행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험성에 따른 구분수용'도 국내법규는 잘 정비되어 있지만, 교정 실제에 대해서는 '대개 이행'으로 평가된다. 2014년 11월 현재 민영교도소를 제외한 전체 51개 교정시설의 보안등급은 4개로서 개방시설은 1개소, 완화경비시설은 14개소, 일반경비시설은 35개소, 중경비시설은 1개소이다. 전체 교정시설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35개 교도소가 일반경비시설에 속하고 있어 위험성에 따른 구분수용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호장비'에 대한 평가 역시 교정실제에 대해서는 '대개 이행'으로 평가되었다. 법규상으로 보호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 교정 실제에서

수용자들의 보호장비에 대한 불만과 진정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2.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의 이행실태 평가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은 수용자 생활의 기본원칙, 생활과 작업의 공간, 급식과 의류 및 침대·침구, 위생과 의료 및 운동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규의 「최저기준규칙」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의료와 관련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자에 대한 의식주 관련 보장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형집행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기준규칙」에서 요구하는 수형생활과 자유생활 사이의 상이점을 극소화하는 내용은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형집행법」 제1조 목적과 제55조 수형자 처우의 원칙 등 각 조문의 규정내용에서 개방처우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 등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거실유형과 관련하여 「형집행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혼거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독거수용 이행을 위하여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의 비율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하고,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급식, 의류, 침대와 침구에 대해서는 수용자의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수용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위생과 운동에 대한 국내법규는 「최저기준규칙」에 규정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의료와 관련하여 교정시설내 의사의 역할에 대하여 국내법규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내용 구분		「최저기준규칙」	국내 법규	교정 실제
1. 기본 원칙	1. 존엄성의 원칙	해당 규정 없음	○	-
	2. 정상성의 원칙	제60조 제1항	□	-
2. 생활과 작업의 공간	1. 거실의 유형	제9조 제1항, 제2항	○	△
	2. 공간과 설비	제10조, 제11조	○	△
3. 급식과 의류 및 침대·침구	1. 급식	제20조 제1항, 제2항	○	○
	2. 의류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8조	○	○
	3. 침대와 침구	제19조	○	△
4. 위생과 의료 및 운동 등	1. 위생 1-1. 화장실(위생설비)	제12조	○	□
	1-2. 목욕과 샤워	제13조	○	△
	1-3. 세면 등	제15조	○	○
	1-4. 이발과 면도	제16조	○	○
	1-5. 청소	제14조	○	○
	2. 의료 2-1. 기본관점	제62조	X	-
	2-2. 의료 인프라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2조 제1항, 제2항	○	○
	2-3. 의사의 역할 2-3-1. 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주치의로서의 역할)	제24조, 제25조 제1항	□	□
	2-3-2. 위생상태 관리업무 (보건위생 담당자로서의 역할)	제26조 제1항, 제2항	□	□
	2-3-3. 수용자의 건강상태 보고(조언자로서의 역할)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32조 제3항	□	□
	3. 의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3-1. 의료의 기록화	해당 규정 없음	□	○
	3-2. 제3의 의료기관에 의한 진료	해당 규정 없음	○	○
	4. 운동과 오락 등 4-1. 운동	제21조 제1항, 제2항	○	○
	4-2. 오락 등	제78조	○	○

이행 수준: ○: 양호(80% 이상 이행), □: 대개 이행(60% 이상~80% 미만 이행),
△: 불충분(30% 이상~60% 미만 이행), X: 불량(30% 미만 이행)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과 관련된 교정 실제의 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표 3-2>와 같이 21개 세부 항목에서 10개 항목은 「최저기준규칙」의 이행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각각 4개 항목은 ‘대개 이행’과 ‘불충분’으로 평가되었으며, 3개 항목은 교정실제의 점검에 적절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대개 이행’으로 평가된 항목은 ‘화장실(위생설비)’, ‘의사의 역할- 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의사의 역할-위생상태 관리업무’, ‘의사의 역할-수용자의 건상상태 보고’이고, ‘불충분’으로 평가된 항목은 ‘거실의 유형’, ‘공간과 설비’, ‘침대와 침구’, 그리고 ‘목욕과 샤워’이다.

이행 수준이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된 4개 항목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거실의 유형’은 「최저기준규칙」은 수용자의 독거실 수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의 교정시설은 혼거실을 위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공간과 설비’의 경우에는 수용자 1인당 거실면적이 현저하게 작은 경우가 많으며, 「법무시설최저기준규칙」의 1인당 거실면적 4.62㎡(1.4평)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구금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한영수 외, 2003)의 독거실 평가기준의 ‘보통’[1.5평 미만(3.96㎡~4.95㎡)] 지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간과 설비’의 평가 항목인 조명, 난방, 환기 등은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침대와 침구’에 대한 평가는 수용자들이 대부분 혼거실을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 1인당 거실면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정시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명에 매트리스를 1개씩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부정적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목욕과 샤워’는 ‘샤워실은 주로 하절기에 이용한다’거나 ‘온수는 겨울철에만 보급된다’고 보고한 기존의 실태조사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불충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외에 ‘대개 이행’으로 평가된 4개 항목 중에서 ‘화장실(위생설비)’은 최근에 화장실 변기를 개선하는 등 위생설비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대개 이행’으로 평가했다. 나머지 3개 항목(‘의사의 역할-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의사의 역할-위생상태 관리업무’, ‘의사의 역할-수용자의 건상상태 보고’)은 모

두 의사의 역할과 관련된 항목이다. 수용자들은 의사의 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기대수준이 매우 높아 교정시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의 역할에 대한 수용자의 기대수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수형자 처우'의 이행실태 평가

수형자 처우와 관련하여 처우의 목적과 방식, 교도작업, 교육과 종교 등, 석방준비 등에 대한 국내법규의 규정내용은 전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목적과 방식과 관련하여 「형집행법」은 수형자에 대한 처우가 재사회화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형자 분류와 개별처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형집행법」은 교도작업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본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작업의무에 대해서는 형법뿐만 아니라 「형집행법」에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교도작업의 본질과 관련하여 실용성과 작업부과에 있어 개인별 특성에 따른 고려, 작업량과 작업시간, 교도작업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규정 내용은 「최저기준규칙」을 충족하고 있다.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과 교도작업에서 수형자 보호와 관련한 규정은 사회내 작업장의 수준과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수당과 안전에 대한 규정은 대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업부과에 있어서 금지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최저기준규칙」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교도작업의 내용 가운데 사회의 동종작업과 유사한 작업과 관련한 규정은 교도작업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교육과 종교 및 신문·방송·도서이용과 관련한 국내법규는 「최저기준규칙」의 내용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과 관련한 국내법의 규정은 오히려 「최저기준규칙」의 기준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내용이 충실하고, 신문과 방송, 도서실의 설치는 수용자에게 각종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사회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표 3-3〉 '수형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내용 구분		「최저기준규칙」	국내 법규	교정 실제
1. 처우의 목적과 방식	1. 재사회화 처우	제65조	□	-
	2. 수형자 분류	제67조, 제68조	○	□
	3. 개별처우	제6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9조	○	□
2. 교도 작업	1. 교도작업의 원칙 1-1. 교도작업의 본질	해당 규정 없음	□	-
	1-2. 교도작업의 의무성	제71조 제2항	○	-
	1-3. 교도작업의 부과에 있어서 금지되는 사항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2항	□	-
	2. 교도작업의 내용 2-1. 실용성	제71조 제4항, 제5항	○	○
	2-2. 유사성	제72조 제1항	X	○
	2-3. 수형자에 적합한 교도작업	제71조 제2항, 제6항	○	○
	2-4. 작업량과 작업시간	제71조 제3항, 제75조 제1항, 제2항	○	○
	3. 교도작업의 운영방식	제73조 제1항, 제2항	○	○
	4.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등	제7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
	5. 교도작업에서 수형자 보호	제74조 제1항, 제2항	□	□
3. 교육과 종교 및 신문· 방송· 도서 이용	1. 교육	제77조 제1항, 제2항	○	○
	2. 종교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2조	○	○
	3. 신문과 방송 등의 이용 및 도서실의 설치 3-1. 신문과 방송 등의 이용	제39조	○	○
	3-2. 도서실의 설치	제40조	○	○
4. 석방의 준비	1. 가족 등 과의 관계	제79조, 제80조	○	○
	2. 처우의 사회화	제61조	□	□
	3.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60조 제2항	□	△
	4. 갱생보호	제64조, 제8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

이행 수준: ○: 양호(80% 이상 이행), □: 대개 이행(60% 이상~80% 미만 이행),
△: 불충분(30% 이상~60% 미만 이행), X: 불량(30% 미만 이행)

석방의 준비와 관련하여 국내법규는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의 시행뿐만 아니라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등 수형자 자신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관계유지를 위한 각종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처우의 사회화와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교정위원 제도, 취업알선 협의기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있어서 민간참여에 대한 일련의 규정을 두고, 사회적응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중간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된 교정 실제의 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표 3-3>과 같이 세부 항목 21개 중에서 4개 항목은 국제규범의 이행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17개 항목 중에는 10개 항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5개 항목은 '대개 이행', 2개 항목은 '불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수형자의 처우' 중에서 '양호'로 평가된 항목은 '교도작업의 내용-실용성', '교도작업의 내용-유사성', '수형자에게 적합한 교도작업' '작업량과 작업시간', '교도작업의 운영방식', '교육', '종교', '신문과 방송 등의 이용', '도서실의 설치', '가족 등과의 관계'이다. '대개 이행'이라고 평가된 항목은 '수형자 분류', '개별 처우',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교도작업에서 수형자 보호', '처우의 사회화'이며, 이행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평가된 항목은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갱생보호'이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수용자로 하여금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처우시설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범실시 단계이므로 사회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되어야 할 영역이고, 갱생보호사업 역시 출소자들의 필요와 욕구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국제규범의 이행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수형자 분류', '개별 처우', '교도작업에 대한 수당', '교도작업에서 수형자 보호', '처우의 사회화'는 대체로 제도적 수준에서 「최저기준규칙」을 이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내용을 확충해가야 할 영역이므로 '대개 이행'으로 평가하였다.

4.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의 이행실태 평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에 대한 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기준규칙」에서 권리의 내용과 구제 감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규는 그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내용 구분		「최저기준규칙」	국내 법규	교정 실제
1. 권리 내용	1. 수용자의 지위	해당 규정 없음	X	-
	2. 권리 등에 대한 고지	제35조 제1항, 제2항	○	○
	3.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권리 3-1. 교통을 위한 통지 3-1-1. 수용과 이송의 통지	제44조 제3항	○	○
	3-1-2. 사망, 중병, 중상해 등의 통지	제44조 제1항	○	○
	3-1-3. 수용자에 대한 통지	제44조 제2항	○	○
	3-2. 가족 등과의 접견교통	제37조	○	○
	4. 수용자 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4-1. 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	제45조 제1항, 제2항, 제3항	X	□
	4-2. 수용자의 소유물 처리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
2. 권리 구제와 감찰 등	1. 청원과 불복 1-1. 청원과 불복의 경로	제3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
	1-2. 제3자에 의한 청원과 불복의 신청	해당 규정 없음	○	-
	1-3. 청원과 불복 신청의 처리	제36조 제3항, 제4항	○	○
	2. 법률가의 조력 등	해당 규정 없음	□	-
	3. 감찰	제55조	□	□

이행 수준: ○: 양호(80% 이상 이행), □: 대개 이행(60% 이상~80% 미만 이행),
△: 불충분(30% 이상~60% 미만 이행), X: 불량(30% 미만 이행)

먼저, 국내법규에서는 수용자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수용자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는 내용을 「형집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와의 교통에 권한 권리는 접견, 서신에 대해서는 권리로서 보장하고, 전화 등을 규정하는 등 「최저기준규칙」의 규정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 이송과 관련하여 보호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원과 불복과 관련하여 수형자에 대한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 순회점검, 소장면담, 청원, 행정심판, 감사원에의 심사청구 및 직무감찰,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등이 보장되고, 사법상의 권리구제제도로서는 행정소송, 국가배상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헌법재판소에의 헌법소원 등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최저기준규칙」을 충족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진정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법률가의 조력과 관련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법규는 실질적으로 해당 국제규범을 상당 부분 이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수형자의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규정이 따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대개 이행’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교정시설에 대한 감찰은 행형법상 순회점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감사원에 의한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의 정기적인 점검 등이 마련되어 있는 등 「최저기준규칙」의 내용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이외의 외부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감찰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 감독’에 대한 교정 실제의 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표 3-4>와 같이 13개 세부항목 중에서 3개 항목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10개 항목 대부분은 「최저기준규칙」을 대체로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개 항목(‘권리 등의 고지’,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권리-수용과 이송의

통지', '사망, 중병, 중상해 등의 통지', '수용자에 대한 통지', '수용자의 소유물 처리')은 이행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개 항목('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와 '감찰')은 '대개 이행'으로 평가되었다.

'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는 법규가 정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교정시설에 따라 수용자의 이송과 관련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수용자들이 원하는 정도만큼 보호조치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동안 해당 항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여 이행 수준을 '대개 이행'으로 평가하였다.

현재 개별 교정시설에 대한 '감찰'은 상급기관인 교정본부에 의해서 3년에 1회 정도 실시되고, 각 지방교정청별로 교정본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소속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1회씩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감찰은 모두 상급기관에 의한 것이어서, 교정시설과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규범의 규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5.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의 이행실태 평가

미결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국내법규는 기결수용자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수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밖에 미결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미결수용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기결수용자와 구분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시설내에 수용할 경우 분리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류는 평상복에 대하여 미결수용자용이 구분되어 있고, 의료와 관련하여 미결수용자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미결수용자가 작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고, 가족 등과의 접견에 있어서 미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견횟수를 매일 1회로 하는 등 「최저기준규칙」을 충족하고 있

다. 그러나 급식과 물품지급은 기결수형자와 같은 양과 기준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소수수용자와 관련하여 정신이상 수용자에 대한 국내법규의 내용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이송할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이상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전문교정시설에 대한 규정내용이 없다.

〈표 3-5〉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내용 구분		「최저기준규칙」	국내 법규	교정 실제
1. 미결 수용자	1. 무죄추정의 원칙	제84조 제2항	○	-
	2. 수용과 생활공간 2-1. 구분수용	제8조, 제85조 제1항	○	○
	2-2. 거실	제86조	○	△
	3. 급식과 의류 및 의료 3-1. 급식	제87조	X	○
	3-2. 의류	제88조 제1항, 제2항	○	○
	3-3. 의료	제91조	○	○
	4. 교도작업	제89조	○	○
	5. 물품구입과 접견교통 5-1. 물품구입	제90조	X	○
	5-2. 가족 등과의 접견교통	제92조	○	○
	5-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93조	○	○
2. 소수 수용자	1. 정신이상 수용자	제8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
	2. 외국인수용자 2-1. 차별금지	해당 규정 없음	△	-
	2-2. 규칙 등의 고지	해당 규정 없음	○	-
	2-3. 의사소통	제51조 제1항, 제2항	○	-
	2-4. 영사 등과의 접촉	제38조 제1항, 제2항	△	○
	2-5. 종교와 문화의 존중	해당 규정 없음	○	△

이행 수준: ○: 양호(80% 이상 이행), □: 대개 이행(60% 이상~80% 미만 이행),
△: 불충분(30% 이상~60% 미만 이행), X: 불량(30% 미만 이행)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 국내법규는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도록 하고 전담교정시설을 두어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개별면담과 통역 및 번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칙 등의 고지, 영사 등과의 접촉 등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미결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국내법규는 기결수용자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수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밖에 미결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미결수용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기결수용자와 구분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시설내에 수용할 경우 분리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류는 평상복에 대하여 미결수용자용이 구분되어 있고, 의료와 관련하여 미결수용자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미결수용자가 작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고, 가족 등과의 접견에 있어서 미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견횟수를 매일 1회로 하는 등 「최저기준규칙」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과 물품지급은 기결수형자와 같은 양과 기준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소수수용자와 관련하여 정신이상 수용자에 대한 국내법규의 내용은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이송할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이상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전문교정시설에 대한 규정내용이 없다.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 국내법규는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도록 하고 전담교정시설을 두어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개별면담과 통역 및 번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칙 등의 고지, 영사 등과의 접촉 등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의 「최저기준규칙」이행실태를 평가하면, <표 3-5>와 같다.

교정실제를 검점한 내용에 근거하여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 관리'의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세부항목 16개 중에서 평가 제외 항목 4개를 제외하고, 대체로 국제규범을 잘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항목에서 이행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행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모두 9개 항목으로 미결수용자의 '구분수용', '급식', '의류', '의료', '교도작업', '물품구입', '가족 등과의 접견교통',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다. 이외에 '대개 이행'으로 평가된 항목은 1개 항목('정신이상 수용자')이며, '불충분'으로 평가된 항목은 나머지 2개 항목('거실'과 외국인 수용자 '종교와 문화의 존중')이다.

현행 교정처우에서 정신이상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정신질환 수용자의 인원이 증가하고, 수용자의 정신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정신이상 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대개 이행'으로 평가하였다.

미결수용자의 '거실'은 앞서 기결 수용자의 거실 유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시설 여건상 혼거 수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독거 수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최저기준규칙」의 기준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전국 교정시설의 독거실 비율이 낮고, 미결수용자들이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분산되어 분리수용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불충분'으로 평가하였다.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와 문화의 존중' 항목은 제대로 실태파악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특히 외국인 미결수용자의 경우에 전국 교정시설에 분산 수용되어 있고, 외국인 기결 수용자의 경우에도 3개 교정시설만이 외국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처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행수준을 '불충분'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의 이행실태 평가

교정시설의 적정규모와 관련하여 국내법규는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여 「최저기준규칙」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직원과 관련하여 국내법규에서는 교정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서 직원의 선발과 처우, 보수와 복리 등에 대하여 다른 공무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형집행법」은 제10조 교도관의 직무에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도관직무규칙, 계호업무지침 등 법무부령으로 교도관 직무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에서 권장하는 교정시설의 조직, 직원선발과 근무, 복수와 복지 및 근무조건, 직무교육, 교정직원의 사명과 행동지침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교정직원에게 적용되는 교정공무원법(가칭)으로 할 것이 필요하다.

<표 3-6>은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에 관하여 세부 항목별로 「최저기준규칙」이행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 관련 세부 항목 9개 중에서 7개 항목은 이행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각각 1개 항목씩이 ‘대개 이행’,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행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세부 항목은 교정시설의 조직에서는 ‘소장’, 그리고 직원과 관련된 6개 세부항목(‘직원선발의 기준’, ‘근무유형과 지위’, ‘보수와 복리 및 근무조건’, ‘직무교육의 내용’, ‘교정직원의 사명과 행동지침’, ‘직원의 구성’)이다.

‘대개 이행’으로 평가된 항목은 교정직원의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과 계속교육’이다. 법규 규정이나 신규 및 계속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잘 조직되어 있지만, 교정 실제에서 교정직원과 관련된 문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이행’으로 평가하였다. 수용자의 청원사건 중에서 ‘직원 관련 불만’과 ‘부당처우(폭언,

근무태만, 직무유기, 가혹행위 등)'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에서도 교정직원의 인권교육이나 직무교육을 권고하는 결정례가 많았다.

〈표 3-6〉 '교정시설 조직과 직원'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내용 구분		「최저기준규칙」	국내 법규	교정 실제
1. 교정 시설의 조직	1.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제63조 제3항, 제4항	○	△
	2. 소장	제5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
2. 직원	1. 직원선발의 기준과 직원의 처우 1-1. 직원선발의 기준	제46조 제1항	○	○
	1-2. 근무유형과 지위	제46조 제3항	○	○
	1-3. 보수와 복리 및 근무조건	제46조 제3항	○	○
	2. 직무교육 2-1. 신규교육과 계속교육	제47조 제1항, 제2항, 제3항	○	□
	2-2. 직무교육의 내용	제54조 제2항	○	○
	3. 교정직원의 사명과 행동지침	제46조 제2항, 제48조	○	○
	4. 직원의 구성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3항	○	○

이행 수준: ○:양호(80% 이상 이행), □: 대개 이행(60% 이상~80% 미만 이행),
△: 불충분(30% 이상~60% 미만 이행), X: 불량(30% 미만 이행)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이행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60% 이상이 500명 이상의 수용인원 규모이기 때문이다. 수용인원 규모가 2,000명 이상인 시설이 3개, 1,000명 이상-2,000명 미만인 시설은 19개, 500명 이상-1,000명 이하인 시설은 10개, 수용규모가 500명 미만인 시설은 20개 기관이다. 민영교도소 1개소를 포함한 52개 교정시설 중에서 수용인원이 500명 미만인 시설은 38%(20개/51개)에 불과하다.

제3절 소년·여성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1. 소년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준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관련법령을 평가하고 교정실제를 점검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3-7>과 같다.

먼저 국제규범의 내용에 대응하는 국내법규의 내용으로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함께 소년수용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수용자에게 적용이 되는 규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법규의 수준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서 국제규범의 '수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항목의 경우, 이것은 특별히 소년수용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수용자에게 중요한 것이고 국내 법령에서 수용자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양호' 평가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형집행법」에 상응하는 내용이 있지만 소년수용자에게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것이 법령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법규의 평가에서 '양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국내법규를 평가한 결과 25개 항목 중에서 15개 항목은 '양호'를, 6개 항목은 '대개 이행'으로, 4개 항목은 '불충분'으로 평가되었다. '불량'의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국제규범에 비추어 볼 때 국내법규의 내용이 조금 부족한 '대개 이행'의 경우를 보자. 대개 이행은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반영된 조항이 법규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설환경, 정신건강,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 직원의 전문성, 소장자격, 그리고 직원의 자세 등이다.

시설환경과 관련해서는 소년교도소의 거실은 소규모 기숙사나 개인침대를 가져야 한다는 국제규범에 비추어볼 때 국내법규에서는 소년교도소의 시설환경에 대한 특칙이나 예외조항을 찾을 수 없었고, 다만 화재안전이나 체육시설, 문화공간 등의 확보, 사생활보호, 침구제공, 청결유지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규가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개 이행'으로 평가하였다.

〈표 3-7〉 '소년수용자'에 관한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내용 구분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국내 법규	교정 실제
1. 수용 질서	1. 정보의 비밀보장	제19조	○	○
	2. 구금소년의 신입절차 등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
	3. 성인범죄자와의 분리	제29조	○	□
	4. 소년교도소의 규모	제30조	△	○
	5. 보호장비와 강제력 제한	제64조, 제65조	△	△
	6. 징벌절차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	△
2. 기본적 생활	1. 시설환경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	□
	2. 개인물품소지	제35조, 제36조	○	○
	3. 급식과 영양	제37조	○	○
	4, 운동과 오락	제47조	○	□
	5. 의료서비스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	□
	6. 정신건강	제53조	□	□
	7. 질환 또는 사망시 고지	제56조, 제57조, 제58조	○	○
3. 사회 복귀	1. 개별처우와 분류	제28조	○	○
	2. 학과교육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	○
	3. 직업훈련	제42조, 제43조	○	○
	4. 작업	제44조, 제45조, 제46조	○	○
	5. 종교	제48조	○	○
	6. 접견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	○
	7. 사회복귀	제79조, 제80조	△	△
4. 권리 구제	1.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	제72조, 제73조, 제74조	□	□
	2. 권리구제와 청원	제76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	○
5. 직원	1. 전문성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	△
	2. 소장 자격	제86조	□	□
	3. 직원의 자세	제87조	□	□

이행 수준: ○: 양호(80% 이상 이행), □: 대개 이행(60% 이상~80% 미만 이행),
△: 불충분(30% 이상~60% 미만 이행), X: 불량(30% 미만 이행)

두 번째 '대개 이행' 평가를 받은 영역은 '정신건강'이다. 국제규범에서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소년에게 정신과 치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출소 후에도 정신건강의 악화를 막기 위한 진료가 계속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권고한 반면 우리 형 집행법에서는 정신질환이 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외에 출소 후 진료계획에 대한 규정은 담지 않고 있다.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에서 중요한 점은 교정기관에 속하지 않는 제3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감독관 점검(inspection)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점이다. 「형집행법」에서는 교정시설 순회점검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는 규정이외에 외부기관에 의한 교정기관 점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실제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 인권국에서 사안 발생시 점검을 위한 방문을 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점검은 아니다.

'직원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규범은 소년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직무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국내법규에서는 소년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필요한 특별한 자격이나 특별한 직무교육 내용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소년교도소 운영지침>에서 소년교도소 근무직원에 대한 자격과 직무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있다.

'소장의 자격'에 대해 국제규범에서는 행정능력이 있고 정규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국내법규에는 소년교도소장의 자격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도소장의 자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실제로 소장이라는 자리는 공무원 신분으로 공식화된 직위라는 점에서 '자격있고 행정능력' 있는 자가 소장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년교도소 직원이 갖추어야할 자세'에 대해 국제규범은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심을 보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내법규에서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수용자의 인권존중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다만 추상적인 원칙만이 아니라 보다 구체화된 강령의 형식으로 인권존중의 원칙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불충분하다고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불충분한' 법규로 판정된 경우들을 보자. 국제규범 제30조는 "소년들을 위한 개방교도소가 있어야 하며 이것은 보안등급이 없거나 최소한을 가진 교도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법규에서는 상응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으며 소년교도소 시설과 보안등급과 관련한 소년수용자 특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규범 제30조가 권고하는 작은 규모의 교도소 규정과 관련하여 국내 형집행법 제6조에 '신설 교도소의 수용인원을 500명 이내로 한다'는 내용은 소년교도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되어 '불충분'의 평가를 하였다.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제한'과 관련해서 국제규범 제64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신중한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제65조에서는 소년교도소에서는 무기의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신중한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교도소에서 무기의 소지와 사용의 금지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불충분 판정의 이유이다.

징벌절차와 관련해서도 국제규범에서는 징벌절차의 법적근거, 징벌위원회의 개최, 징벌위원회에서 소년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점들에 관해서 국내법규도 관련조항을 가지고 있다. 다만 제67조에서 소년수에게 식사량을 줄이거나 접견의 제한 등을 징벌종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국내법규에 따르면 접견의 제한도 징벌의 한 종류이며, 소년수형자라고 해서 접견을 징벌로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불충분' 판정을 부여하였다.

국내법규에 대한 판정에 이어 교정실제의 점검에 대한 판정을 보면 '양호'가 13개, '대개 이행'이 8개, '불충분'이 4개이다.

'대개 이행'은 성인범죄자와의 분리, 시설환경, 운동과 오락, 의료서비스, 정신건강,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 소장의 자격과 직원의 자세이다.

성인범죄자와의 분리에 대해 '대개 이행'판정을 한 이유는 법률에서는 성인과 소년의 구분수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면서도 <수용관리 업무지침>에서는 소년수용자와 혼거시에 성인봉사원을 지정배치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시설환경의 실제에 대해 '대개 이행'의 판정을 한 이유는 실제로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형자의 수가 120명 남짓이라 과밀수용이나 대형교도소 문제를 염려할 수준이 전혀 아니지만 독거실 확보가 많지 않고, 여전히 한 거실당 많은 수용자가 있는 혼거실이 위주이기 때문이다.

운동과 오락과 관련해서는 체육대회나 문화행사 등이 개최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보다 많은 체육과 오락,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도입과 시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대개 이행'의 평가를 부여하였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전문의 확보, 간호

사나 의료인력 확보면에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약물예방과 재활교육 등 인지행동치료모델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는 취지에서 '대개 이행'의 판정을 부여하였다. 정신건강도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소년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출소 후 진료계획까지 수립하는 종합적인 진료과정이 준비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서 개선을 요한다는 점에서 '대개 이행'의 판정을 하였다.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은 독립기관에 의한 정기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소장의 자격과 직원의 자세 부분도 소년수용자의 보호를 위해 소장이 가져야 할 자격이나 태도, 직원들이 가져야 할 역할과 태도에 대한 실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사 '대개 이행' 판정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정실제의 점검 영역에서 '불충분'으로 판정이 된 항목은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제한, 징벌절차, 사회복귀, 그리고 직원의 전문성이다.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제한 부분에서는 국제규범이 소년교도소에서의 무기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법규가 이것을 금지하지 않다보니 실제로도 소년교도소라고 해서 무기를 소지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정을 한 것이다. 징벌절차와 관련해서 소년수용자에게는 접견금지를 징벌로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역시 국내법규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년수용자라고 해서 징벌부여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런 판정을 하였다. 사회복귀와 관련해서는 국내법규가 출소준비와 사후지원에 대해서 규정이 매우 약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관점에서 '대개 이행'으로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직무교육에서 소년교도소 운영과 관련된 교육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바, 소년수용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나 국제인권관련 교육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개 이행'으로 판정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년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국제규범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법규와 실제는 '대체로 양호'라고 판정할 수 있다. 몇 가지 '대개 이행'과 몇 가지 '불충분'이 나오긴 했지만 「형집행법」 상 소년수용자에 대한 처우 고려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소년교도소 운영지침도 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

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2. 여성수용자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준거로 하여 국내법규와 교정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다음의 <표 3-8>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국내법규의 판정결과를 보면 ‘양호’가 5개, ‘대개 이행’이 9개, ‘불충분’이 2개, 그리고 ‘불량’이 3개이다.

양호로 판정받은 것은 개인위생, 신입건강검진, 여성고유의 의료적 욕구, 예방적 의료서비스, 그리고 임신수용자와 양육유아에 대한 규정이다. ‘대개 이행’은 신체검사, 징벌적 격리, 약물남용과 치료 프로그램, 자살과 자해예방, 외부감시단 구성, 사후지원, 그리고 10대 소녀수용자에 관한 규정이다. ‘불량’으로 판정된 것은 이송, 신체제한장치, 평가와 분류, 그리고 출소준비에 관한 규정이다. 먼저 ‘대개 이행’ 판정을 받은 항목부터 살펴보자.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국제규범에서는 여성수용자의 몸을 수색할 때는 여성직원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신체검사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스캔과 같은 대안적 방법을 개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형 집행법에서는 여성직원에 의한 여성수용자 검사 및 수색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으나 신체수색방법의 대안적 방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대개 이행’의 판정을 부여하였다. 징벌적 격리와 관련해서 국제규범은 임신수용자, 영아수용자, 모유수용자에 대해 독거실이나 징벌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법규에서는 양육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보다 자세한 규정은 없다. 약물남용과 치료프로그램, 자살과 자해예방과 관련하여 ‘대개 이행’의 판정을 한 이유는 여성수용자를 위한 치료시설이나 여성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대해 규정한 조항이 국내법규에는 없다는 것 때문이다.

〈표 3-8〉 '여성수용자'에 관한 국제규범 이행실태 평가표

내용 구분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	국내 법규	교정 실제
1. 수용 질서	1. 이송	제4조	×	×
	2. 신체검사	제19조, 제20조, 제21조	□	□
	3. 징벌적 격리	제22조	□	□
	4. 신체제한장치	제24조	×	×
	5. 평가와 분류	제40조, 제41조	×	×
2. 기본적 생활	1. 개인위생	제5조	○	○
	2. 신입건강검진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
	3. 여성고유의 의료적 욕구	제10조, 제11조	○	○
	4. 정신건강	제12조, 제13조	△	△
	5. 약물남용과 치료프로그램	제15조	□	□
	6. 자살과 자해예방	제16조	□	□
	7. 예방적 의료서비스	제17조, 제18조	○	○
3. 사회복귀	1. 접견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44조	□	□
4. 외부기관 점검	1. 감시단 구성	제25조	□	□
5. 교정인력과 훈련	1. 인력과 훈련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
6. 출소준비와 사후준비	1. 출소 준비	제45조	□	×
	2. 사후지원	제46조, 제47조	□	□
7. 특수 범주의 여성수용자 처우	1. 임신수용자와 양육유아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1항, 제2항, 제52조 제1항, 제2항, 제3항	○	○
	2. 10대 소녀수용자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	□

이행 수준: ○: 양호(80% 이상 이행), □: 대개 이행(60% 이상~80% 미만 이행),
△: 불충분(30% 이상~60% 미만 이행), X: 불량(30% 미만 이행)

물론「형집행법」제50조 제1항에서는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는 명목적인 선언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원칙이 어디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그야말로 명목상의 선언적 진술에 그칠 수도 있으며, 정신건강, 자살예방, 약물남용 등에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소장에게 그러한 고려의 책임을 일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접견과 관련해서 국제규범은 여성수용자에게 가족접견 금지가 징벌로 부과되어서는 안되고, 주거지와 다른 곳에 위치한 교도소에 이송되었다고 가족과의 만남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가 되어야 하며, 남성수용자와 동등한 기회로 부부만남이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국내법규는 미성년자녀와의 접견시 장소변경 접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만 규정되어 있다.

출소준비에 대해 국제규범에서는 여성수용자를 위한 개방교도소나 중간처우센터 활용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규에서는 특별히 여성수용자에게 개방교도소나 중간처우센터를 활용하라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규정으로 중간처우센터나 개방교도소, 그리고 수용자 자치제에 대한 국내법규가 존재하므로 '대개 이행'의 평가를 부여하였다. 또 사후지원과 관련하여 여성수용자가 출소 후 사회재복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여성출소자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권고를 반영한 규정은 국내법규에 없다. 다만 귀가비 지급 등 최소한의 출소 후 지원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충분'이나 '불량'이 아닌 '대개 이행'으로 판정하였다.

외부감시단 구성과 감시단에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국내법규에서는 대응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실무상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 인권국 등의 기관이 감시단을 구성하여 방문 시 여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독립적인 기관의 점검과 감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모니터링할 때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10대 소녀수용자에 대한 국제규범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미성년자로서 받을 수 있는 법률적 보호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성과 동등한, 그리고 소년과 동등한 기회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내법규는 10대소녀수용자만을 따로 떼어 규정을 만든 부분은 전혀 없지만 여성수용자로서, 그리고

소년수용자로서 국내법에 규정한 보호는 받는 것으로 보아 ‘대개 이행’으로 판정하였다.

‘불충분’의 항목은 정신건강과 교정인력과 훈련이다. 국제규범 제12조는 개별화되고, 성인지적이며, 여성의 트라우마에 맞는 종합적인 정신건강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제13조는 교도소직원들이 여성수용자들의 스트레스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법규에서는 아직 여성수용자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나 시행은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처방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고,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에 대한 진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불량’으로 판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여성수용자들을 지키는 여성직원들은 여성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여성직원들이 여성수용자를 위한 처우와 프로그램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직위에 많이 포진하고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여성교도소의 직원들은 성 민감성 교육과 성차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또한 여성고유의 특성에 대한 교육과 여성의 인권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하며 양육유아 수용자를 위해 아동발달과 아동건강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내법규에는 이러한 여성수용자의 특성과 욕구의 중요성, 인권교육과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형집행법」 제51조는 여성수용자 처우시 유의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단지 여성수용자의 상담, 교육, 작업은 여성직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이다.

‘불량’으로 판정한 항목은 이송, 신체제한장치, 그리고 평가와 분류이다. 이송과 관련해서는 여성수용자들은 근거지에 이송한다는 국제규범의 내용이 국내법규에서는 전혀 없다는 이유로, 불량 판정을 내렸다. 신체제한장치와 관련해서는 여성수용자가 출산할 때에는 신체구속장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국내법규에는 모성보호와 건강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으나 출산시 신체제한장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평가와 분류와 관련해서는 국제규범에서는 여성수용자들의 고유한 욕구와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분류도구를 개발해야 하며 성 인지적 평가도구를 통해 여성수용자가 과잉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류나 위험성 평가도구와 관련

하여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논의된 적도 별로 없고 거기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없다. 따라서 ‘불량’의 판정을 부여하였다. 교정실제에 대한 판정은 국내법규에 대한 판정과 같은 수준으로 판정되었다. 법률적 근거가 없이는 교정현장에서 실행에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국내법규의 판정에 따라 거의 자연적으로 교정실제의 판정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의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수준을 국제규범에서 판정하면 아직 법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이 2010년에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각국이 국제규범을 반영하여 국내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 시간적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볼 때 앞으로 우리 국내법규에서도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특칙이 더 개선된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을 긍정적으로 해볼 수 있다. 임신과 출산, 여성특유의 의료적 욕구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법률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정신건강, 약물중독 등과 관련된 법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4절 교정처우 관련 개선방안

제3부 제1장에서는 교정처우의 영역별로 국내법규와 교정처우의 구체적인 현실이 국제규범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그 이행 수준을 평가하였다. 교정처우의 각 영역별 평가표(<표 3-1>～<표 3-6>)와 소년·여성수용자 처우의 이행실태 평가표(<표 3-7>과 <표 3-8>)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정처우 관련 법규와 교정의 실제는 전반적으로 국제규범을 ‘양호’(80% 이상 이행)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되었고, 단지 제한적으로 몇몇 항목에서 이행수준이 ‘불충분’(30% 이상～60% 미만 이행)하거나 ‘대개 이행’(60% 이상～80% 미만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교정처우가 보다 선진화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의 기준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1. 교정처우의 주요 영역별 개선방안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여러 영역 중에서「최저기준규칙」이행수준이 특히 미흡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수용시설 자체의 문제와 수용시설의 설비’와 관련된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이다. 이어서 ‘교정직원의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수용자 의료 처우’, ‘감찰 및 교도작업 수용자의 보호’ 와 관련된 이행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가. 수용시설과 수용시설 설비의 선진화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거실 유형, 거실 공간, 화장실과 목욕과 관련된 문제는 대체로 수용시설과 수용시설 설비의 선진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수용시설 및 설비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①소규모 교정시설의 지향: 수용인원의 소규모화, ②독거실의 확충 및 적절한 거실공간의 확보, ③화장실과 목욕시설 등 노후 한 설비의 개선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나.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처우의 내실화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처우의 내실화에는 ①수형자 분류의 내실화와 개별 처우, ②중간처우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 ③갱생보호의 내실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수형자의 분류와 개별처우는 현행 법규정에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만 교정의 실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수형자의 개별처우를 위해서는 적합한 교정시설과 처우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정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용인원의 규모가 1,000명 이상 대규모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형자의 분류, 개별 처우, 교정시설의 소규모화, 처우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서로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우리나라 교정처우 개선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중간처우제도'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적절한 조화를 바탕으로 시설내 처우의 사회화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사회복귀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 교정직원의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현행 교정처우에서 교정직원의 신규교육과 계속교육 프로그램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만, 수용자의 청원사건이나 진정사건에는 교정직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교정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의 청원 사유 중에서 '직원 관련 불만'(접견, 집필, 귀휴, 교육 등 각종 교화프로그램 관련 불복 사항)이 16.8%(180건)이고, '부당처우'(폭언, 근무태만, 직무유기, 가혹행위 등)가 15.1%(162건)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수용자의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에서도 해당 교정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가 많은 편이다.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 규정하는 교정직원의 직무교육 관련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럽교정시설규칙」은 「최저기준규칙」에서 요구하는 육체교육에 덧붙여서 모든 교정직원이 교정처우에 관한 국제규범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외국인, 여성,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수용자의 관리를 담당하는 교정직원은 해당 업무에 따르는 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수용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전문화된 직무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 의료 처우의 선진화

교정처우에서 의료 처우 선진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사의 역할 강화, ②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의 내실화와 적절한 처우가 포함된다.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의사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수용자에 대한 진단과 진료'(주치의로서의 역

할), '위생상태 관리업무'(보건위생 담당자로서의 역할), '수용자의 건강상태 보고'(조언자로서의 역할)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정 실제에서는 의사의 '위생상태 관리업무'(보건위생 담당자로서의 역할), '수용자의 건강상태 보고'(조언자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교정시설 의사의 수용자 주치의로서의 역할 인식, 다양한 환자군의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등이 보다 치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수용자 의료 처우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부각되는 문제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증가에 따른 처우 문제이다. 사회적으로도 정신질환자수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의 정신과 진료인원과 정신질환자수의 증가는 눈에 띄는 현상이다. 교정당국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각 지방교정청별로 정신보건센터를 1개씩 운영한다는 계획 속에 2014년 현재 3개의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시범실시단계이므로 그 실효성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감독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처우 대상자의 선발,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처우 대상 수용자의 필요와 만족도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교정시설에 대한 감찰과 교도작업에서 수형자에 대한 보호

현재 교정시설은 교정본부와 지방교정청에 의한 순회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내부 감찰 기능은 원활히 수행되고 있지만, 교정시설과 독립된 기구에 의한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교정조직 내부의 고질적인 관행이나 문화는 내부 감찰을 통해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건전하고 선진적인 교정정책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감찰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교정시설의 교도작업 환경은 일반 사회의 직업환경에 비하여 열악한데, 이로 인해 수형자들은 산업재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짐으로써 수형자들에 대한 보호가 일반 사회수준에 비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수용자 특성별 처우의 개선방안

가. 소년수용자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

소년수용자를 위한 국제규범인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준거로 하여 우리나라 현행법령의 내용과 교정현장에서의 실행을 살펴본 결과, 소년수용자를 위한 법 규정과 실무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소년교도소 수용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소년수용자를 위한 상세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 여기에서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의 세부조항들과 관련하여 국내법규와 교정 실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소년수용자의 '수용질서'와 관련해서는 ① 성인범죄자와의 분리, ②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제한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기본적 생활'과 관련해서는 ① 시설환경, ② 의료서비스-약물남용 재활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복귀'와 관련해서는 무의탁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aftercare)의 내용이 더 다양화되고 현실화되어야 한다. '권리구제'와 관련해서는 외부기관에 의한 교도소 점검으로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정직원'과 관련해서는 ① 직원의 전문성과 ② 직원의 소년수용자에 대한 자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정직원에 대해서는 아동심리나 아동복지, 국재인권기준에 대한 직무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직원이 소년수용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다짐이나 약속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여성수용자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

여성수용자를 위한 국제규범인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 처우에 관한 규칙」은 2010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여성범죄자의 특성, 여성범죄자의 욕구, 여성범죄자의 처우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여성범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성들의 정신건강욕구, 의료적 욕구, 그리고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현행 법령상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 규정은 여성수용자에 대한 고유의 의료적 욕구와 임산부, 유아양육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규범의 권고와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규범이 권고하는 내용 중에서 국내법규와 교정실제에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여성수용자의 '수용질서'와 관련해서는 ① 이송과 ② 평가와 분류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1개소인 여성전용교도소의 확충을 통해 여성수용자의 근거지 가까이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여성수용자에 대한 평가와 분류에서 성인지적 평가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존의 평가 및 분류를 위한 측정도구들이 여성수용자들에게 타당성을 갖는지, 혹은 남녀 수용자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 별도의 분류도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여성수용자의 '기본적 생활'과 관련해서는 개인위생, 건강검진, 여성고유의 의료적 욕구, 정신건강, 약물남용과 치료, 자살과 자해예방, 예방적 의료서비스 등이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정신건강, 약물남용과 치료, 자살과 자해예방과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수용자의 '사회복귀'와 관련해서는 여성수용자에게 있어 가족접견, 특히 자녀와의 접견의 중요성, 그리고 특히 여성수용자의 경우에 전담수용시설이 1개소뿐이기 때문에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교도소에 수용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이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여성교도소에 대한 외부감시', 여성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교정인력과 훈련'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성의 고유한 사회복귀 요건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들을 반영한 전략과 정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여성 직원들이 핵심지위에 갈수 있는 기회가 남성 직원과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직원들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 성희롱 예방 교육, 여성수용자의 인권, 국제규범에 대한 교육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소수집단에 속하는 10대 소년수용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10월 현재 전국 교도소의 10대 소년수용자는 6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이 성 인지적, 연령 인지적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국내법규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

가. 「최저기준규칙」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

국내법규에서 「최저기준규칙」의 이행이 미진한 부분으로는 ① 미결수용자 처우 관련 규정 미비, ② 교정직원의 특수성과 전문적 직무교육에 대한 세부 규정 미비, ③ 수용자의 권리구제와 감찰 관련 규정의 미비, ④ 수용자 의료처우의 질 개선을 위한 법규정의 정비 필요성, ⑤ 교정사고시 외부인력 투입 관련 법규정의 미비, ⑥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규정의 상세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규의 제정 및 법규 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소년과 여성수용자 처우를 위한 국내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

소년수용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에 비추어 볼 때, 국내법규가 불량인 항목은 없었고 소년교도소의 규모,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제한, 정신건강, 사회복귀, 외부기관점검, 직원의 전문성, 소장의 자격, 직원의 자세가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국내법규의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하다.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제정된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여성수용자의 근거지 교도소로 이송, 출산 시 신체제한장치 사용금지, 성인지적 평가도구의 개발과 분류 항목이 '불량'으로 판정되었고, 정신건강 항목과 교정직원 훈련과 전문성 항목이 '불충분'으로 평가되어 각각에 해당하는 국내법규의 제정 등 법률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형행법령상 여기저기 흩어진 규정들을 모두 모으고, 국제규범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하여 <소년교도소 운영지침>과 유사한, 가칭 <여성수용자 처우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4-66-01
연구총서 14-CB-05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발　　행 | 2014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박상옥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7,000원
인　　쇄 | 고려씨엔피 (02)2277-1508/9
I S B N | 978-89-7366-450-4 9333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